

제 220 호

1972. 3. 6.

정액: 39 원
창간일: 1953년 6월 18일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편집인: 김병준
인쇄: 서울신문사

시 보

차 례

| | |
|-------------|-------------|
| 조 례..... 5 | 고 시..... 32 |
| 규 칙..... 13 | |
| 사 령..... 26 | 공 고..... 47 |

서울특별시

시 보 세 분 목 차

< 조 비 >

| | | |
|-----------|-------------------------|----|
| ○ 제 682 호 | 서울특별시학교환경정화위원회조례 | 5 |
| ○ 제 683 호 |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 | 5 |
| ○ 제 684 호 |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 6 |
| ○ 제 685 호 | 서울특별시광주대단지사업소설치조례중 폐지 | 6 |
| ○ 제 686 호 | 서울특별시시민회관사용료정수조례중 개정조례 | 7 |
| ○ 제 687 호 | 서울특별시오물수거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 9 |
| ○ 제 688 호 | 서울특별시세조례중 개정조례 | 10 |
| ○ 제 689 호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 | 10 |
| ○ 제 690 호 | 서울특별시시립병원수가조례중 개정조례 | 10 |
| ○ 제 691 호 | 서울특별시유도도로통행요금정수조례중 개정조례 | 10 |
| ○ 제 692 호 |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중 개정조례 | 11 |
| ○ 제 694 호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 | 12 |

< 규 칙 >

| | | |
|------------|---------------------------|----|
| ○ 제 1195 호 | 서울특별시광주대단지사업소 지체폐지에 관한 규칙 | 13 |
| ○ 제 1196 호 |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지체중 개정규칙 | 13 |
| ○ 제 1197 호 | 서울특별시인사사무처리규칙중 개정규칙 | 14 |
| ○ 제 1198 호 |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 14 |
| ○ 제 1199 호 | 서울특별시문건번히접수제행정처분규칙중 개정규칙 | 15 |
| ○ 제 1200 호 | 서울특별시지체중 개정규칙 | 19 |
| ○ 제 1201 호 | 서울특별시한강건설사업소지체중 개정규칙 | 22 |
| ○ 제 1202 호 | 서울특별시근로자합숙소지체중 개정규칙 | 22 |
| ○ 제 1203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 22 |
| ○ 제 1204 호 | 서울특별시정원규칙중 개정규칙 | 24 |
| ○ 제 1205 호 |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 개정규칙 | 25 |

< 사 령 >

| | |
|----------|----|
| ○ 인 사 발령 | 26 |
|----------|----|

< 고 시 >

| | | |
|---------|--------------------|----|
| ○ 제 1 호 | 서울도시계획일부변경 및 소로망결정 | 32 |
| ○ 제 2 호 | 도시계획소로확정 | 33 |
| ○ 제 3 호 | 노선표시 | 33 |
| ○ 제 4 호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소로신설 | 34 |

| | | |
|----------|-----------------------------|----|
| ○ 제 5 호 | 도시계획소로신설 및 일부변경 | 34 |
| ○ 제 6 호 | 도시계획소로신설 및 변경 | 35 |
| ○ 제 7 호 | 도시계획소로결정 (확정) | 35 |
| ○ 제 9 호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 계획인가 | 36 |
| ○ 제 10 호 | 도시계획시설 (가로) 일부 변경 | 36 |
| ○ 제 11 호 | 서울도시계획 일부변경 | 37 |
| ○ 제 12 호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고시 | 37 |
| ○ 제 13 호 |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 38 |
| ○ 제 14 호 |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 | 38 |
| ○ 제 15 호 | 서울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 | 38 |
| ○ 제 16 호 | 서울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 | 41 |
| ○ 제 17 호 |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 취소 | 42 |
| ○ 제 18 호 | 서울특별시 중기관리사업소 위치변경 | 42 |
| ○ 제 19 호 | 공유수면매립면허 | 42 |
| ○ 제 20 호 | 도시계획소로신설 및 일부변경 | 42 |
| ○ 제 21 호 | 도로계획소로결정고시 (확정) | 43 |
| ○ 제 22 호 | 도시계획세부과 지역고시 | 43 |
| ○ 제 23 호 |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 | 43 |
| ○ 제 24 호 |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 (안) | 44 |
| ○ 제 25 호 | 1972 년도 정기중측검사 실시 | 44 |
| ○ 제 26 호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 계획인가 | 45 |
| ○ 제 23 호 | 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 | 47 |
| < 공 고 > | | |
| ○ 제 1 호 |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효력회복 | 47 |
| ○ 제 2 호 |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효력상실 | 48 |
| ○ 제 4 호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자허가 | 48 |
| ○ 제 6 호 | 도시계획공원변경 (폐지) | 49 |
| ○ 제 7 호 | 도시계획 미관지구결정 | 49 |
| ○ 제 8 호 | 도시계획 공원일부변경 | 50 |
| ○ 제 11 호 | 환지에정지 변경지정 | 50 |
| ○ 제 17 호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 50 |

| | | |
|----------|-------------------------------|----|
| ○ 제 13 호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 | 51 |
| ○ 제 19 호 | 청산금납입고지서 공시송달 | 52 |
| ○ 제 20 호 |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요역상설 | 53 |
| ○ 제 21 호 |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요역상설 | 53 |
| ○ 제 22 호 | 화양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공람공고 | 54 |
| ○ 제 26 호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 변경허가 | 54 |
| ○ 제 27 호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 변경허가 | 55 |
| ○ 제 31 호 | 청산금납입고지서 공시집달 | 55 |
| ○ 제 33 호 | 천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추가사업 인가신청기간의 지정공고 | 56 |
| ○ 제 35 호 | 하천공작물설치허가 요역회복 | 57 |
| ○ 제 40 호 | 수도공채원리금 상환공고 | 57 |
| ○ 제 43 호 | 개발제한구역 분치지구변경 및 개발제한구역지적결정 | 57 |
| ○ 제 46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시시 공고 | 58 |
| ○ 제 47 호 | 도시계획미관지구 및 공적지구결정 | 58 |
| ○ 제 48 호 | 서울특별시강의 직언거각공고 | 61 |
| ○ 제 51 호 | 직언거각공고 | 61 |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 682 호 제정 1971. 12. 29

서울특별시학교환경정화위원회조례

제 1 조 (목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 2 조의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중 학습 또는 학교보건위생에 나쁜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행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학교환경정화위원회 (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직무) 정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행위중 학습 또는 학교보건위생에 나쁜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① 지방세법시행령 제 103 조, 제 104 조, 제 105 조 제 1 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흥 음식점소

② 극장, 도상장, 화장장, 종교화약류의 제조장 및 그 저장소 합숙가스의 제조장 및 그 저장소

③ 오물정소법시행령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오물수집장소, 오물매립장, 오물진계소, 지장, 분뇨종말처리장

④ 공중목욕탕중 휴게실 및 터키탕

⑤ 폐수처리장 및 화계장

⑥ 전염병 격리병사 또는 격리소, 전염병 요양소 및 진료소

⑦ 노점, 행사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행위로서 학습 또는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행위

제 3 조 (구성) ① 정화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할위원 7 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위원 1 인과 학무국장, 관리국장, 경찰국장, 보건사회국장 및 건설국장이 된다.

제 4 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① 정화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6 조 (감사 및 서기) ① 정화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 1 인과 서기 1 인을 둔다.

② 감사 및 서기는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감사할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덕 식

1971 년 12 월 31 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683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 2 호 급수사용료요율표 중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조례의 제 29 조의 급수사용료는 1972년 1월정수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제 2 호 | | | | | |
|--|---|----------|---|-----------|-----|
| 금 수 사 용 료 요 율 표 | | | | | |
| 구 분 | 1 건 1 개 월 기본요금 | | 초 과 사 용 료 | | 비 고 |
| | 기본수량 (㎡) | 기본요금 (원) | 사용량구분 (㎡) | ㎡당 단가 (원) | |
| 가 사 용 | 10 | 150 | 11 ~ 20 | 15 | |
| | | | 21 ~ 30 | 20 | |
| | | | 31 ~ 40 | 30 | |
| | | | 41㎡ 이상 | 40 | |
| 영 집 용 | 30 | 1,150 | 31 ~ 200 | 70 | |
| | | | 201 ~ 1,000 | 90 | |
| | | | 1,001㎡ 이상 | 120 | |
| 2 종 | 30 | 900 | 1 ㎡ | 35 | |
| 공 업 용 | 200 | 6,000 | " | 35 | |
| 목 욕 탕 | 600 | 48,000 | 601 ~ 1,000 | 100 | |
| | | | 1,001 ~ 3,000 | 160 | |
| | | | 3,001 이상 | 200 | |
| 한 종 | 600 | 12,000 | 1 ㎡ | 25 | |
| 공 설 공 장 | 100 | 1,000 | 1 ㎡ | 10 | |
| 특 수 용 | 사용수량 | 1㎡당 20 원 | | | |
| 사 설 소 화 전 | 원 100 원 | | | | |
| 기 타 | 1. 사 설 소 화 전 의 연 습 사 용 료 는 특 수 용 요 율 에 의 한 다. 2. 일 시 급 수 사 용 료 는 사 용 수 량 일 방 미 터 당 70 원 으 로 한 다. | | | | |
| 국무총리의 승인된 건물 서울특별시건설 사업소설치조례를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1년 1월 4일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 | | 국무총리의 승인된 연어 계정 한 서울특별 시광주매단지사업소설치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2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 | |
| ◎서울특별시조례제 684 호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5 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서울특별시조례제 685 호 서울특별시광주매단지사업소 설치조례폐지에 관한 조례 1970. 6. 18 서울특별시조례제 621 호 | | |

서울특별시 광수대단지사업소 설치조례는 서울특별시조례 제 686 호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1972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시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시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제 1호 시민회관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관사용료

| 구 분 | 사 용 료 | 오 | 오 | 야 | 비 고 |
|-----|------------------|------------------|------------------|------------------|---|
| | | 전 | 후 | 강 | |
| | | 07 : 00 | 12 : 30 | 18 : 00 | |
| | | 11 : 30 | 17 : 00 | 22 : 30 | |
| 대강당 | 평 일 토, 일, 축 일 | 24,480 28,800 | 33,600 43,200 | 78,000 96,000 | 유투공연에 한해서 오부 야간은 2일이상 계속 사용시에는 기본요금외 10%를 감액함. |
| 소강당 | 평 일 토, 일, 축 일 | 3,600 4,200 | 6,600 8,400 | 6,640 8,640 | |
| 별 관 | 평 일 | 2,400 | 3,840 | 4,080 | |
| | 토, 일, 축 일 | 2,640 | 4,800 | 5,040 | |
| 신 관 | 평 일 | 4,800 | 7,200 | 7,200 | |
| | 토, 일, 축 일 | 5,400 | 9,600 | 9,600 | |

다만, 대강당사용료징수조례에 있어서
 일반공연물(소)과 의화는 기준입장료를
 300원 방화 200원 특수공연물(음악, 무
 용)은 300원으로 하여 일반공연물과 영
 화는 기준입장료를 초과하는 100원까지
 특수공연물은 매 300원까지 사용료의 100
 분의 10를 가산한다.

2. 예식장사용료

| 구 분 | 단 위 | 사 용 료 | 비 고 |
|-----|-----|-------|-----|
| 소강당 | 건 | 4,500 | |
| 별 관 | 건 | 3,000 | |
| 신 관 | 건 | 7,500 | |

3. 기 타

| 구 분 | 단 위 | 사 용 료 | 비 고 |
|--------------|----------|--------|-----|
| 영 화 촬영 | 1 회 3 시간 | 12,000 | |
| T.V 중계방송 | 1 회 | 1,900 | |
| 탄신현수막 계 시 | 1회3일이내 | 3,000 | |

별표제 2 호 부속실비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종별 | 품명 | 단위 | 사 용 료 | 비 고 |
|-----------|--------------|--------|--------|---|
| 악기 | 스탁워 피아노 (대형) | 대 | 7,200 | 조율비별도 |
| | " (중형) | " | 3,600 | |
| | 피아노 (소형) | " | 600 | |
| 음향장치 | 마이크 | " | 600 | |
| | 무선 마이크 | " | 1,200 | |
| | 테이프 레코더 | " | 600 | |
| | 테이프 레코더 | " | 1,200 | |
| 조명장치 | 종합조명 | 일대 | 28,800 | 종합조명은 쇼, 무용, 연극, 오페라, 국극 및 이에 준하는 조명이며, 증형피아노와 마이크를 포함한다. 다만, 25 KW미만 종합조명은 2,000원으로 한다. 20 KW미만 조명은 8,000원으로 한다. |
| | 스포트라이트 3 KW | 대 | 1,200 | |
| | 스포트라이트 2 KW | " | 720 | |
| | 포나라이프 | 회로 | 1,800 | |
| | 스트라이프 | K | 360 | |
| | 프로젝터 | 대 | 1,800 | |
| | 트립 타이프 | 바이 | 120 | |
| | 아크 | 대 | 1,200 | |
| 전기 사용료 | KV | (관려요금) | | |
| 무대장치 | 연단 | 식 | 2,400 | 관외 개역시에 한함. 일수세산은 대출 및 반납 일몰 포함한다. |
| | 회의용 각자 | " | | |
| | " 의자 | " | 2,400 | |
| | 외전 무대 | " | | |
| | 음향 판 | " | 2,400 | |
| | 그리스트라이트 | " | 2,400 | |
| | 심각형 달마루 | 개 | 600 | |
| | 사각형 | " | 960 | |
| | 구대용 계단 | " | 600 | |
| | 보마루 다리 | " | 360 | |
| 악보대 및 악보성 | " | 2,400 | | |
| 영상장치 | 에르메당 영사기 | " | 7,200 | 1회 5분 이내 |
| | 심프렉스 | " | 2,400 | |
| | 빛순시사 | " | 240 | |
| | 녹음 | " | 240 | |
| | 선전영화 | 일 | 1,200 | |

별표제 3호 병난방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 관

병난방조정수기간 (병방은 6월 15일~8월말)
(난방은 11월 15일~3월말)

| 구 분 | 시 간 | 오 전 | 오 후 | 야 간 | 비 고 |
|-----|-----|--------|--------|--------|-----|
| 대 | 강 당 | 17,280 | 24,480 | 24,480 | |
| 소 | 강 당 | 1,440 | 2,040 | 2,040 | |
| 별 | 관 | 1,200 | 1,440 | 1,440 | |
| 실 | 관 | 1,680 | 2,400 | 2,400 | |

2. 부 속 실

| 구 분 | 단 위 | 사 용 료 | 비 고 |
|-------------|-----|--------|------------|
| 구 내 식 당 | 월 | 24,000 | 6월 11월은 한액 |
| 구 내 다 방 | " | 12,000 | " |
| 구 내 이 발 소 | " | 3,600 | " |
| 예 식 장 의 상 실 | " | 2,400 | " |
| 예 식 장 잡 무 실 | " | 2,400 | " |
| 예 식 장 미 장 실 | " | 4,800 | 난방에 한함. |
| 예 식 장 사 진 실 | " | 1,000 | |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한 연은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정수조례중 개정조례중 이어 공포한다.

1972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양 백 식

◎서울특별시조례제 687호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정수조례중
정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제 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남입외무자의 전거수지가 서울특별시 관내의 수거지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 표

| 종 별 | 등 급 | 금 액 (월액) |
|--------|---------------------------|----------------|
| 진 일방가정 | 1 | 120 |
| | 2 | 110 |
| | 3 | 85 |
| | 4 | 60 |
| | 5 | 40 |
| | 6 | 25 |
| 다방오물 | 기 타 | 25 |
| | 차량 1대당 (4.5톤기준) 10키로그램 | 2,000 원 5 원 |
| 문 노 | 총당 (18인) | 15 원 |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2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 688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6조제 1호중 "1,000분의 1"을 "1,000분의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2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 689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세조례중 개정조례로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제 1항중 "1,000분의 1"을 "1,000분의 2"로 하고 동조제 2항중 "1,000분의 0.5"를 "1,000분의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2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 690호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 개정조례로서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조 진료비 사용료 및 수수료율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별표 수가기준표 8. 일원료율율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 원 료

| 등급별 | 일 수 | 금 액 |
|-----|-----|---------|
| 무 등 | 1 일 | 1,400 원 |
| 1 등 | 1 일 | 900 원 |
| 2 등 | 1 일 | 600 원 |
| 3 등 | 1 일 | 400 원 |

다만 식사 및 침구일체를 제공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2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 691호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별표 1-5 다음에 별표 1-6와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6

가. 도로 및 노선명

서울특별시 강변 3로

나. 정 수 구 간

자: 용산구 한강로 3가 140

지: 마포구 합정동 139

다. 정 수 기 간

자: 1972. 1. 1

지: 1988. 3. 31

라. 요 금 액

| 차 종 별 | 요 금 | 비 고 |
|---------|-------|-----|
| 승 용 차 | 30 원 | |
| 3 륜 차 | 30 원 | |
| 2 륜 차 | 20 원 | |
| 화 물 차 량 | 40 원 | |
| 버 스 | 50 원 | |
| 특 수 차 량 | 130 원 | |

별표 1 - 7

가. 도로 및 노선명

강변 5로 유료도로

나. 정 수 구 간

자: 영등포구 동작동 산 45

(국립묘지앞)

지: 성동구 신사동 제 3 한강교

다. 정 수 기 간

자: 1972. 1. 1

지: 1986. 12. 31

라. 요 금 액

| 차 종 별 | 요 금 | 비 고 |
|-------|------|-----|
| 승 용 차 | 20 원 | |
| 3 륜 차 | 10 원 | |

| 차 종 별 | 요 금 | 비 고 |
|---------|------|-----|
| 2 륜 차 | 10 원 | |
| 화 물 차 량 | 20 원 | |
| 버 스 | 30 원 | |
| 특 수 차 량 | 60 원 | |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2 년 1 월 31 일

서울특별시청 장 역 식

◎서울특별시소매제 692 조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가스공급소매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을 " 7,000 Kcal " 다음에 " 및 24,000 Kcal " 를 삽입하고 동조제 2 호를 삭제한다.

제 18 조제 1 항을 " 별표제 1 " 다음에 " 및 별표 1 - 2 " 를 삽입한다.

별표 1 다음에 별표 1 -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 2 요 금 고

<표준용량 24,000 Kcal >

| 구 분 | 개 설 기 본 요 금 | | 초 과 사용 요 금 | | 비 고 |
|-------|-------------|----------|------------|------------|-----|
| | 기 본 요 금 | 초 과 사용 양 | 기 본 사용 양 | 초 과 사용 단 가 | |
| 가 사 용 | 3 ㎡ | 360 원 | 기준계정 사용량 | 120 원 | |
| | | | 10 ㎡ 까지 | | |
| | | | 기준계정 초과사용량 | 150 원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한 연은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위원회의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2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 제 694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제 1조 (목적) 도시계획법 제 7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2.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3.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 3조 (심의배제사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
2.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명명한 위치변경 (고도로복원범위내의 좌우변경)
3. 시내버스정류장
4. 폭 12미터이하인 준용하천 및 구거와 이들의 복개에 한하되 복개에 있어서는 폭 3m미만이거나 도로로 사용하여 위천 하천

제 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 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시계획시설에 관계되는 관계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관계공무원이 위원이 아닌 위원외수는 7인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조 (위원장등의 직책) ①위원장은 위원회사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 (회의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계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7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위원은 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하되 5인이내로 한다.

③소위원회에 책임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의 임무를 통할한다.

업소 및 서부건설사업소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를 삭제하고 제 7 조를 제 6 조로 한다. *별표 1*

사업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동부건설사업소 | 동대문구용두동 663번지 |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
| 남부건설사업소 | 영등포구노량진동 13번지 | 용산구, 영등포구 |
| 서부건설사업소 | 서대문구홍제동 292번지 |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마포구 |
| 역정사업소 | 동대문구면목동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청(출장소, 동포함) - 구청장
 제 74 조제 2 호중 *총무과장*을 *부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인사사무처리규칙중 개정규칙
 이에 공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1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197 호

서울특별시인사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성소의 인사담당자
- 가. 본청은 실, 과사무제장
- 나. 구청은 총무과장
- 다. 지하철건설본부, 한강건설사업소와 공무원교육원은 주무과 사무제장
- 라. 기타사업소는 주무과장(파견) 제
- 택하지 않는 사업소는 주무과장 또
- 는 사무장)

제 6 조제 1 항중 *시장의*를 삭제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관부 자격요건 심사권자는 다음과 같다.

본청, 사업소 - 시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2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198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배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급수조배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 조제 4 항중 *2원*을 *5원*으로
 한다.

별표제 1 호 급수종별구분표 *1. 가사용 :
 시민주거용 급수 및 본표외 타급수종별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용급수*
 을 *1. 가사용 : 시민주거용급수* 다만
 10 세대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단일 양수기로 계량되는 급
 수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세대당 평균사용
 량에 대하여 조례 별표제 2 호의 가사
 용 효율률 적용한다. 이경부 총량률

| | |
|--|---|
| <p>사용세대로 산출한 평균 사용량의 1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전상한다 * 로 동표 2. 15 적요란송 * 용도가 주택건 용이 아닌 4 층이상의 건축물 * 늘 이 규칙 급수 증별구분표 각양에 명시된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용이 아닌 4 층이상의 건축물 * 로 동표 2. 16 적요란송 * 영업용도나 종사원 및 내 적용으로 월 60㎡ 정도 급수가 소요된 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한 급수 * 을 * ① 위에 제기한 업체의 영업용도나 종 사원 및 내객용으로 월 60㎡ 이상의 급수가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 한 급수 * ② 영업용 제 2 층에 해당하는 2 개이상의 업체가 단일 양수기를 전 유하여 급수를 사용할 때 * 로 * 8. 특수 용 : 관공서, 병영, 학교, 철도, 관영종합 병원, 대학부속병원, 일간신문사등에 대한 급수 * 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p> | <p>당 사회단체, 병영, 학교, 철도, 관영 또 는 대학부속병원, 신문사, 방송국등에 의 한 급수 * 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1972 년 1 월장수분부터 적용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동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2 년 1 월 31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양택서</p> <p>①서울특별시규칙제 1199 호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중 다함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준표 및 별표 2 처분규칙준표를 별지와 같 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동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1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준표

| 일련 번호 | 위 반 내 용 | 적용 법 조 | 처 분 강 도 | 비 고 |
|----------|---|----------------------|------------------|--------------------|
| 1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차단(신호불)신호위반 | 노 무 법 제 5 조 | 5 | 차단신호위반은 사고요인 형위 |
| 2 | 동행금지 및 차간구역간행 (일반동행포함) | 제 6 조 1. 2조 | 5 | |
| 3 | 혼합완화조치불응 | 제 7 조 | 5 | |
| 4 | 가. 진행로위반(차선)(일반노로) 나. 중앙선침범 (고속 *) | 제 11 조의 2 제 11 조 | 5 10 | 사고요인 형위 |
| 5 | 우선순위위반 | 제 12 조 | 5 | |
| 6 | 횡단위반 | 제 14 조 | 5 | |

| 일련 번호 | 위 반 내 용 | 적용법조 | 배 점 | 계 정 사 유 |
|----------|---|------------------|-----------|----------------------|
| 7 | 후진위반 | 제 14 조 | 5 | |
| 8 | 회전위반 | " | 5 | |
| 9 | 제차간의 안전거리 확보불이행 가. 일반도로 나. 고속도로 | 제 15 조 " | 5 10 | 사고요인행위 |
| 10 |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 제 16 조 | 10 | |
| 11 | 부당한 앞지르기 | 제 17 조 | 10 | |
| 12 | 앞지르기 금지위반 | 제 18 조 | 10 | |
| 13 | 건널목통과시 일관정지위반 | 제 20 조 | 20 | |
| 14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 제 21 조 | 5 | |
| 15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제 23 조 | 20 | |
| 16 |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시정지 및 의양의무위반 | 제 24 조 | 10 | |
| 17 | 시행위반 | 제 26 조 | 5 | |
| 18 | 우선멈춤(일시정지)위반 | " | 10 | |
| 19 | 정차위반 | 제 27 조 | 5 | |
| 20 | 주차위반 | 제 28 조 | 10 | 도심지교통유능저해행위 |
| 21 | 수, 정차방법 및 장기정차위반 | 제 29 조 | 10 | |
| 22 | 제차의 동화조작의무위반 | 제 30 조 | 5 | |
| 23 | 제차의 신호의무위반 | 제 31 조 | 5 | |
| 24 | 적계량초과(일반도로) | 제 33 조 | 5 | |
| 25 | " (고속도로) | " | 10 | 사고요인행위 |
| 26 | 정원초과(출퇴근시는 제외) 5-10% 이하(승용화물포함) | " | 5 | |
| 27 | 정원초과(출퇴근시는 제외) 11%이상 | " | 10 | 과몰자동차체의 |
| 28 | 자동차의전단제한위반 | 제 34 조 | 5 | |
| 29 | 정비불량(세동, 조향, 수냉회장 치) | 제 35 조 | |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 업수 고발 |
| 30 | 가. 무면허운전 나. 무면허운전자를 운전제한 행위(면허증소지운전자) | 제 38 조 제44조7항 | 입 점 20 | |

| 일련 번호 | 위 반 내 용 | 적 용 법 조 | 과 벌 | 계 정 사 유 |
|----------|----------------------------------|---------------------------|-----|---------|
| 31 | 음주운전 (알콜성) | 제 39 조 | 20 | |
| 32 | 과로운전 (고속도로에 한함) | 제 40 조 | 10 | 차고요인명령 |
| 33 | 위험방거 지시위반 | 제 41 조 | 5 | |
| 34 | 속도위반제한시속 10 킬로이하 | 제 42 조 | 5 | |
| 35 | " 시속 20 킬로이상 | " | 20 | |
| 36 | 안전운전의무위반 | 제 43 조 | 5 | |
| 37 |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외구불이행 | 제 45 조 1, 2 항 | 20 | |
| 38 | 면허증개시의무위반 | 제 64 조 | 10 | |
| 39 | 면허증불휴대 | " | 20 | |
| 40 | 면허증납부의무위반 | 제 66 조 | 5 | |
| 41 | 운전자준수사항위반 (오토, 오투, 미수) | 제 44 조 1 항 | 5 | |
| | ① 어린이가 보행시 구입범출 또는 시행위반 | " 2 항 | 20 | |
| | ② 보행자회관보도동행시 일시정 지 또는 시행위반 | " 3 항 | 20 | |
| | ③ 개문운행 | " 5 항 | 10 | |
| | ④ (교양미원 2 회마다) | " 7 항 | 5 | |
| | ⑤ (운전자교양카드로출태) | " | 5 | |
| | ⑥ 횡동광구출소재 (12-3 열) | " | 5 | |
| | ⑦ 승차권경도출출수 | " | 10 | |
| 42 | 부정입산출출반 | 입 산 불 된 속 법 제 5 조 2 항 | 20 | |
| 43 | 금지출출소재 | 도 로 운 통 차 량 법 제 53 조 | 5 | |
| 44 | 차량보안기준위반 (출법부착물 소 화기, 속도제한장치) | 제 39 조 제 42 조 | 10 | |
| 45 | 검사증납부의무위반 | 제 57 조 1 항 | 5 | |
| 46 | 자동차제증표부실경사 | 제 78 조 | 10 | |
| 47 | 일시운행허가증납부의무위반 | 제 23 조 5 항 | 5 | |
| 48 | 일시운행증불소재 | 제 34 조 1 항 | 5 | |
| 49 | 승차거부 (도승차장요로감) |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법 제 24 조 | 20 | |

시 보 (제 220 호)

| 의견번호 | 위반내용 | 적용법조 | 배점 | 개정사유 |
|------|---------------|------------------------|----|------|
| 50 | 부양도구명수 | 제 8 조 | 20 | |
| 51 | 판자차용영업행위 | 제 58 조 | 20 | |
| 52 | 폭삭미터기불사용 | 제 24 조 | 10 | |
| 53 | 승무원의 불친절행위 | 자동차운수규칙법 동운수규칙제 2 조 | 5 | |
| 54 | 노선위반 | 자동차운수사업법 동운수규칙제 4 조 | 20 | |
| 55 | 별지전승행위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 조 | 10 | |
| 56 | 교통통의 경우의 조치위반 | 도로교통법 제 47 조 10 항 | 10 | |

별표 2

위 소 제 단 기 준 표

| 의견번호 | 위반종형 | 적용법위 | 처분기준내용 |
|------|--------------------------------|------------------------|--------|
| 1 | 타일번호표시중단행 | 도로운송차량법 제 4 조 | 취 소 |
| 2 | 번호표입의제거운행 | " 제 10 조 | " |
| 3 | 무색차량운전 | " 제 4 조 | " |
| 4 | 부정임산물 | 부정임산물 단속법 제 5 조 1 항 | " |
| 5 | 적성검사미필 | 도로교통법 제 61 조 | " |
| 6 | 행정허관기간중운전 | " 제 65 조 5 항 | " |
| 7 | 운전가결격사유 | " 제 57 조 | " |
| 8 | 사고야기도수 | " 제 45 조 | " |
| 9 | 타일면허대여 (분갈자, 도난차는 개회) | " 제 55 조 | " |
| 10 | 운기기일경과불출무 | " 제 65 조 2 항 | " |
| 11 | 승원초과 (버스에 한하며 기계의 30 명이상) | " 제 33 조 | " |
| 12 | 교통사고 (1) 위반질수초과 | " 제 65 조 3 항 | " |

서울특별시지체증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2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200호, 서울특별시지체증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체증 다듬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조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조 (행정과) ①행정과에 행정제, 지도제와 행정관리제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행정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제

- 가. 구, 동행정조정 및 통계
- 나. 구행정시책의 수립 및 운영
- 다. 구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구역변경
- 라. 지방장관회의
- 마. 구행정관리회의
- 바. 모범·농, 반장 및 시민포상
- 사. 구청비 예산편성 및 구별비정액 조정

아. 구청에 백정하는 사업리에산의 행정계획회의

자. 구, 동공무원의 인사배선에 대한 협의 및 내신(행정직예 포함)차. 과내 타계 수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도제

- 가. 구행정의 지도감독
- 나. 구행정 실적심사
- 다. 시외회에 관한 사항
- 라.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다. 기부금품 및 각종잡부금의 모집
농제와 지도

바. 구, 동관계 진척처리

사. 구, 종합 감사직원

아. 새마을사업추진

자. 시민의 쾌락 운영

3. 행정관리제

가. 사무관리개선 및 능률향상

나. 민원사무 처리지침 및 지도

다. 위임 집행권의 구분 및 사무적상 제외수입

라. 민원사무편함의 착실 및 유지관리

마.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

바. 시민조직 및 운영

사. 단위업무 및 관리직업무개선 연구 발표회

아. 절약제도 및 아이디어명크운영

자. 호적, 인감에 관한 사항

차. 행정시사 및 소개명예 지도감독

가. 구행정관제 심안문서 및 회의통제

다. 보살동 육성

제 16조란; 광역1호승 *아*와 *아*를 삭제한다.

제 22조란 다음과 같이 같다.

제 22조 (사무과) ①사무과에 관리제, 정리제와 저분제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제

가. 국소관행정의 총괄조정

나. 토지구획경리지구내 지장불의 이전 및 보상

| | |
|---|--|
| <p>다. 대형취항업체지도감독 라. 국내예산의 총괄 마. 구획정리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경 과 구건설위 결정 바. 토지구획정리비 예산의 조정 사. 도시계획 관계자재수급 아. 관내사무 및 국내타과, 계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정리제 가. 토지구획정리분담금 과징 나. 경산금 명세작성 및 과징 다. 정리전후의 토지평가 라.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금 수납</p> <p>마. 각종 징수금 체납처분</p> <p>3. 처분제 가. 치비지처분 나. 기타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에 관한 사항</p> <p>제 26조 제 2항승 제 2호와 제 3호를 다 음리 같이 한다.</p> | <p>(신축건물에 따른 수생식변소의 정 화조, 응벽, 석축 및 공작물포함)</p> <p>다. 건축물 구조감정 및 구조역학 마.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 사. 옥내주차장에 관한 사항 아. 위험건물에 관한 사항 가. 축대에 관한 안전도 검사 및 위 험축대에 관한 사항</p> <p>3. 건축 제 2 제 종로, 등대분, 성동, 성북지역의 가. 건축선 지정 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설계 검토 현지도사 및 기술사항에 대한 의 견과 복명(응벽, 석축 및 공작물 포함) 다. 건축허가원 사항에 대한 준공까지 의 공사감독 라. 건축공사의 준공검사에 대한 현지 조사 허가내용과의 확인검토와 기술 사항에 대한 의견과 복명(신축건 물에 따른 수생식변소의 정화조, 응벽, 석축 및 공작물포함) 마. 건축물구조감정 및 구조역학 마.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 사. 옥내주차장에 관한 사항 아. 위험건물에 관한 사항 가. 축대에 대한 안전검사 및 위험 축대에 관한 사항</p> <p>제 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4조(사회과) ①사회과에 사회계, 노 동계와 구호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 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①사회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 와 같다.</p> |
|---|--|

1. 사회제

가. 국소관행정의 종합조정

나. 시민복지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입안

다. 시민생활의 보호 개선지도

라.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인가, 설치령(제 43조제 1항중 「도대시설제」와 제 2항 제 2호를 삭제하고, 제 3호를 제 2호로

마. 라일장병지원 및 가족의 원호에 관한 사항

바.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의 원호 및 보호

사. 자립능력이 없는 무이무학자의 보호

아. 사회사업가의 교육훈련

자. 시영생생원, 양로원의 지도감독

차. 과내서무 및 국내 타과계수관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노동제

가. 노동행정의 조사입안

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다.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라.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마.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바. 시노동위원회에 관한 사항
사. 시립근로자합숙소, 근로복지와 운영의 감독

3. 구호제

가. 요구조자의 조사 및 곤궁한 자의 구호

나. 재해의 조사와 대책수립 및 구호

다. 구호양곡 및 구호금품의 수집관리 및 배정

라. 후생식당 운영유지

마. 자조근로 구호계획수립 및 사업장 관리

바. 지방구조 협의위원회 운영

사. 의원도입구쓰레기물 사후관리

아. 응급구조과 컨터링사사 처리의 관한 사항

제 43조제 1항중 「도대시설제」와 제 2항 제 2호를 삭제하고, 제 3호를 제 2호로 하며, 제 1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정제

가. 국소관행정의 종합조정

나. 시장계획 및 후보지 선정과 개설
다. 시장관계 삼단법집 집행과 감독

라. 도대시설운영 및 지도감독

마. 도대시장 개발계획수립 및 운영조정
바. 회정기금 운영

사.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아. 과내서무와 과내리과, 계수관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53조제 1항중 「유수시설제」와 「유수 시설제」 및 제 2항

제 3호를 삭제하고, 제 4호를 제 3호로 제 5호를 제 4호로 하며,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목제

가. 토목에 관한 조사계획 및 자료의 종합정리과 관련 공사계획의 조정

나. 일반도로, 도로공사물 및 부속물의 계획과 유지보수

다. 토사도끼 유지보수

라. 경면 교차부 가로의 경면 및 도유화 시설에 관한 사항

마. 일반도로상의 보행용 육교의 설계, 시공감독과 유지관리

바. 고가도로, 고속도로, 유료도로의 신
 설에 마르는 설계 시공감독과 유지
 관리
 사. 지하도 및 지하광장 지하도시 시설
 설비의 설계 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아. 사가부도로상의 독립된 구조의 입
 체교차로 시설의 설계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업소직계중
 규칙을 아게 공포한다.

1972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201호
 서울특별시한강건설사업소직계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업소직계중 :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제 1항중 「서무계, 관리계와」 다음
 제 2항제 3호를 삭제하고 제 2항 다음
 과 같이 한다.

2. 관리계

- 가. 노무자지원 및 공급계획
- 나. 노무원 숙식관리
- 다. 각종 장비와 자재의 구입, 조정과
출납
- 라. 장비의 운영 및 정비와 창고관리
- 마. 도판 및 기록류의 제작, 설계감독
- 바. 공사용 석재의 생산
- 사. 생산품출납 및 기타장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근로자합속소직계중 개정규칙
 이에 공포한다.

1972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202호
 서울특별시근로자합속소직계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근로자합속소직계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
 정수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2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 1203호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 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 1항 「관계계」다음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계외」를
 추가하고 제 2항제 1호말미에 「하. 시
 유계산의 관리, 매각임대와 대금의 수납
 (성동, 성북, 서대문, 영등포구계외)」를
 추가하며, 제 2호말미에 「차. 동행정재
 관의 관리」(성동, 성북, 서대문, 영등포
 구계외)」를 추가한다.

제 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조 (사회과) ①사회과에 사회계와
 부녀계를 두고 계장을 행정수사 또는

지방행정수사로 보한다.

②사회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계

- 가. 후생에 관한 사항
- 나. 구호에 관한 사항
- 다. 노인정 및 실비식당에 관한 사항
- 라. 매화장 개장의 허가
- 마. 묘지 및 화장장의 사용허가
- 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사.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
- 아.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자.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 차. 실업자 근로구조
- 카. 과내 타계수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부녀계

- 가. 부녀와 청소년 지도교양
- 나. 부녀자의 권익증진
- 다. 건전 가정육성
- 라. 불우여성의 보호선도
- 마. 영새가정 계몽선정
- 바. 여성단체 지원육성
- 사. 부녀지도자 양성
- 아. 가정부업지도
- 자. 여성의 사회참여도 증가 및 여성 법적지위향상과 부녀복지 조장에 관한 사항
- 차. 부녀 및 아동시설(모자원, 탁아소)에 관한 사항

가. 기타부녀 및 아동에 관한 사항
제 11 조제 1 항중 「환경계」를 「가로정비계」로 「환경계장」을 「가로정비계장」으로 하며, 제 2 항제 3 호 「환경계」를

「가로정비계」로 한다.

제 1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 조 (건축과) ①종로구, 중구, 남산구의 건축과에는 수택계, 단속계, 건축제1계와 건축제2계를 두고 기타구청은 건축제1계와 건축제2계를 둔다.

②주택계장과 단속계장은 지방행정수사로 건축제1계장과 건축제2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할 수 있다.

③건축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제1계와 건축제2계는 구청장이 그 관할구역을 조성한다.

1. 수택계

- 가. 주택행정의 총합 및 주택통계
- 나. 주택건설에 관한 계몽
- 다. 불량건물 처리
- 라. 시영주택건설 후보지선정
- 미. 택지조성에 관한 사항
- 바. 시영주택의 관리
- 사. 시영주택에 수반하는 납입금의 정수와 채납액 정리
- 아. 아파트 입주자의 선정 및 생활지도
- 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
- 차. 과내 타계수관여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단속계

- 가. 무허가건물의 발생방지
- 나. 무허가건물의 철거단속
- 다. 위법건축물의 철거
- 라. 무허가건물에 관한 진정처리
- 마. 철거민의 입수분양에 관한 사항

3. 건축제1계

가. 구역별 건축허가 최종경사 및 준공과 같이 개정한다.
 동경사
 나. 구역별 건축허가의 준공까지의 공사상속
 다. 구역별 건축허가 조경완수한 한
 위법건축에 대한 허가 취소 및 고발
 라. 건축사 및 건축업자 지도 감독
 마. 위법건축에 관한 사항
 바. 구역별 위법건축에 관한 사항
 사. 국내 하계수판에 속하기 위하여
 도 사항(종로구, 중구, 동산구 제외)
 4. 건축제 2개
 가. 구역별 건축허가, 적공경사 및 준
 공경사
 나. 구역별 건축허가의 준공까지의 공
 사상속
 다. 구역별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한
 위법건축에 대한 허가 취소 및 고발
 라. 주택의 안전도 검사 및 위험축
 대에 관한 사항
 마. 영건에 관한 사항
 바. 시영수대(아파트) 건축 및 보수
 공사
 시. 구역별 위법건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별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직 | 명 | 정원 |
|--------|---------|-----|
| 비서(3급) | 감류상당 | 1 |
| 비서(3급) | 감류상당 | 5 |
| 비서(4급) | 감류상당 | 1 |
| 동무(3급) | 감류상당 | 307 |
| 정 | 계 | 314 |
| 방시 | 실기 | 2 |
| 방 | 감류 | 2 |
| 방 | 부사 | 1 |
| 방 | 외부 | 8 |
| 방 | 출류 | 9 |
| 방 | 기 | 33 |
| 방 | 전기 | 1 |
| 방 | 회기 | 1 |
| 방 | 무기 | 9 |
| 방 | 보연(3급) | 1 |
| 방 | 보연(3급) | 8 |
| 방 | 감류 | 53 |
| 방 | 명정사 | 253 |
| 방 | 기전 | 7 |
| 방 | 기전 | 8 |
| 방 | 화공 | 3 |
| 방 | 방공 | 6 |
| 방 | 방공 | 2 |
| 방 | 수외관(3급) | 1 |
| 방 | 방의무 | 21 |
| 방 | 방의무 | 9 |
| 방 | 방보 | 3 |
| 방 | 방보 | 9 |
| 방 | 방보 | 5 |
| 방 | 방보 | 1 |
| 방 | 방보 | 47 |
| 방 | 방보 | 15 |
| 방 | 방보 | 390 |
| 방 | 방보 | 833 |
| 방 | 방보 | 20 |
| 방 | 방보 | 29 |
| 방 | 방보 | 6 |
| 방 | 방보 | 11 |
| 방 | 방보 | 1 |
| 방 | 방보 | 8 |
| 방 | 방보 | 11 |
| 방 | 방보 | 54 |
| 방 | 방보 | 34 |
| 방 | 방보 | 7 |
| 방 | 방보 | 1 |
| 방 | 방보 | 120 |
| 방 | 방보 | 29 |
| 방 | 방보 | 10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
 규칙을 이에 통보한다.
 1972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시장 양익식
 ① 서울특별시 규칙 제 1204 호
 서울특별시 정원규칙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다음

| 직 | 명 | 정 | 원 | 비고 |
|-----|-----|-----|--------|---|
| 지 4 | 밤 급 | 신 기 | 3 |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상 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 지 4 | 밤 급 | 수 기 | 1,177 | 1972년 2월 21일 |
| 지 4 | 밤 급 | 기 기 | 801 | 서울특별시장 양 대 식 |
| 지 4 | 밤 급 | 기 기 | 21 | ◎서울특별시규칙제 1205 호 |
| 지 4 | 밤 급 | 기 기 | 25 |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상 제정규칙 |
| 지 4 | 밤 급 | 기 기 | 12 |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상 다음과 같이 |
| 지 4 | 밤 급 | 기 기 | 11 | 개정한다. |
| 지 4 | 밤 급 | 기 기 | 3 | 별표 2 서울특별시경찰관과중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과 서울특별시경찰서 명칭란상 * 남산 2가 파출소 * 을 * 퇴계로 2가 파출소 * 로 같다. |
| 지 4 | 밤 급 | 기 기 | 13 | 부 칙 |
| 지 4 | 밤 급 | 기 기 | 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지 4 | 밤 급 | 기 기 | 57 | 서울특별시시민회관건축비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 지 4 | 밤 급 | 기 기 | 63 | 1972년 2월 21일 |
| 지 4 | 밤 급 | 기 기 | 7 | 서울특별시장 양 대 식 |
| 지 4 | 밤 급 | 기 기 | 1 | ◎서울특별시규칙제 1206 호 |
| 지 4 | 밤 급 | 기 기 | 157 | 서울특별시시민회관건축비규칙 |
| 지 4 | 밤 급 | 기 기 | 41 | 서울특별시 시민회관건축비 다음과 같이 |
| 지 4 | 밤 급 | 기 기 | 7 | 개정한다. |
| 지 4 | 밤 급 | 기 기 | 2 | 부 칙 |
| 지 4 | 밤 급 | 기 기 | 1,23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지 4 | 밤 급 | 기 기 | 1,597 | 서울특별시시민회관건축비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 지 4 | 밤 급 | 기 기 | 17 | 1972년 2월 21일 |
| 지 4 | 밤 급 | 기 기 | 21 | 서울특별시장 양 대 식 |
| 지 4 | 밤 급 | 기 기 | 9 | ◎서울특별시규칙제 1206 호 |
| 지 4 | 밤 급 | 기 기 | 14 | 서울특별시시민회관건축비규칙 |
| 지 4 | 밤 급 | 기 기 | 4 | 서울특별시 시민회관건축비 다음과 같이 |
| 지 4 | 밤 급 | 기 기 | 10 | 개정한다. |
| 지 4 | 밤 급 | 기 기 | 21 | 제 6 조 제 1 항 상 * 지방전속기사, 지방전속기 |
| 지 4 | 밤 급 | 기 기 | 56 | 사보 * 을 * 지방기체기사, 지방기체기 |
| 지 4 | 밤 급 | 기 기 | 101 | 보 * 로 한다. |
| 지 4 | 밤 급 | 기 기 | 5 | 부 칙 |
| 지 4 | 밤 급 | 기 기 | 13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지 4 | 밤 급 | 기 기 | 38 | |
| 지 4 | 밤 급 | 기 기 | 9 | |
| 지 4 | 밤 급 | 기 기 | 1 | |
| 지 4 | 밤 급 | 기 기 | 2,036 | |
| 지 4 | 밤 급 | 기 기 | 2,665 | |
| 지 4 | 밤 급 | 기 기 | 14 | |
| 지 4 | 밤 급 | 기 기 | 12 | |
| 지 4 | 밤 급 | 기 기 | 3 | |
| 지 4 | 밤 급 | 기 기 | 15 | |
| 지 4 | 밤 급 | 기 기 | 9 | |
| 지 4 | 밤 급 | 기 기 | 20 | |
| 지 4 | 밤 급 | 기 기 | 33 | |
| 지 4 | 밤 급 | 기 기 | 118 | |
| 지 4 | 밤 급 | 기 기 | 9 | |
| 지 4 | 밤 급 | 기 기 | 95 | |
| 지 4 | 밤 급 | 기 기 | 67 | |
| 지 4 | 밤 급 | 기 기 | 33 | |
| 지 4 | 밤 급 | 기 기 | 3,093 | |
| 지 4 | 밤 급 | 기 기 | 263 | |
| 지 4 | 밤 급 | 기 기 | 1,774 | |
| 지 4 | 밤 급 | 기 기 | 2,037 | |
| 지 4 | 밤 급 | 기 기 | 10,348 | |

사 령

◎ 1972. 1. 1.

조건부지방행정주사 지 검 식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명함

◎ 1972. 1. 6.

지방조무수 조 방 권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중구근무를 명함

지방조무수 정 용 권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중로구 근무를명함

행정주사 옥 영 영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공업과 근무를명함

기계기사 감 봉 봉

운수행정과 근무를명함

◎ 1972. 1. 10.

지방약무기사 손 성 성

동부병원 약제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약무기사 김 우 우

아동병원 약제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약무기사 김 주 주

영동포병원 약제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약무기사 최 갑 례

마포병원 약제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건축기원보 서 장 별

지방공무원법 제 36조제 1항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을 명함

◎ 1972. 1. 11.

지방행정주사 허 단 섭

과사과 파견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 최 학 현

망우리묘지사무소 파견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사보 신 춘 희

원내의하이 그직을 면함

◎ 1972. 1. 13.

행정주사 홍 기 화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운영부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행정주사 윤 권 환

기획과 (시정연구단요원)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 송 인 현

동대문구 시민봉사실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행정주사 송 용 석

관광과 관광사업부장 직무

대리를 명함

지방행정주사 이 범 운

아과트관리과 수납부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방비서관 방 일 호

통제과 통제기준제장 직무

대리를 명함

◎ 1972. 1. 15.

| | | |
|---------------------|-------|--------------------|
| 지방비서관 | 박 사 하 | 6호봉을 급함 |
| 원예의하여 그직을면함 | | 지하철건설본부 근무할명함 |
| 지방행정사무관 | 김 회 수 | 조건부지방토목기사보 이 은 수 |
|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 | 지방토목기사보에 임함 |
|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 | 6호봉을 급함 |
| 처함 | |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명함 |
| 지방행정사무관 | 임 태 승 | 지방보건의연구소보 조 성 배 |
|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 | 지방행정부속보에 임함 |
| 규정에 의거 전채처함 | | 4호봉을 급함 |
| 지방전공 | 김 수 일 | 세정과 근무를명함 |
| 중구 근무를명함 | | 지방건설기획 한 기 설 |
| 지방전공이명준 | |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3호에 |
| 중구 근무를 명함 | | 의거 감봉 6월을 처함 |
| 지방전공진태수 | | ◎ 1972. 1. 17. |
| 영등포구 근무를명함 | | 지방토목기원보 김 호 정 |
| 지방전공은동환 | |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제 1항 |
| 영등포구 근무를명함 | |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
| 지방행정서기 이 학 모 | | 휴직을 명함 |
|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 | ◎ 1972. 1. 18. |
| 규정에의거 감봉 3월에 처함 | | 지방행정주사 이 병 수 |
| 조건부지방토목기사보 유 근 무 | | 원예의하여 그직을명함 |
| 지방토목기사보에 임함 | | ◎ 1972. 1. 19. |
| 6호봉을 급함 | | 지방서기관 이 계 용 |
| 환경과 근무를명함 | | 원예의하여 그직을면함 |
| 조건부지방토목기사보 박 영 균 | | 환자 1 제 장 김 총 상 |
| 지방토목기사보에 임함 | | 원예의하여 그직을면함 |
| 6호봉을 급함 | | ◎ 1972. 1. 20. |
| 교통연구담 근무를 명함 | | 지방행정서기보 오 수 면 |
| 조건부지방토목기사보 김 병 준 | | 서울특별시 전입을명함 |
| 지방토목기사보에 임함 | |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
| 6호봉을 급함 | | 6호봉을 급함 |
|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명함 | | 서대문구 근무를명함 |
| 조건부지방토목기사보 민 성 기 | | 지방행정서기보 상 계 상 |
| 지방토목기사보에 임함 | | 서울특별시 전입을명함 |

| | | | | |
|------------------|---|---|-------------|----------------|
|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 | | | 토 목 기 과 장 옥 화 |
| 6호봉을 승급 | | | | 서부건설사업소 소장직무 |
| 마포구 근무를명함 | | | | 대리물 명함 |
| 조건부지방행정사무관 김 영 | 영 | | 1972. 1.22. | |
|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제 1항 | | | | 지방건축기과 관 중 권 |
|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 | | | 건축과 건축제 1계장예보함 |
| 유직을 명함 | | | | 지방건축기사 권 옥 성 |
| 지방행정서기보 박 관 | 관 | 영 | | 건축과 건축제 2계장 |
| 서울특별시 직업윤명함 | | | | 직무대리물 명함 |
|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 | | | 지방건축기과 안 충 희 |
| 4호봉을 승급 | | | | 종로구 건축과장예보함 |
| 동대문구 근무를명함 | | | | 지방건축기과 허 작 |
| 지방행정주사보 용 략 | 랍 | 영 | | 동대문구 건축과장예보함 |
| 서울특별시 직업윤명함 | | | | 지방건축기과 유 태 현 |
|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 | | | 성북구 건축과장예보함 |
| 6호봉을 승급 | | | | 지방건축기과 이 은 학 |
| 서대문구 근무를명함 | | | | 서대문구 건축과장예보함 |
| 1972. 1.21. | | | | 지방건축기과 한 기 설 |
| 지방조부보조수 조 목 래 | 래 | 영 | | 마포구 건축과장예보함 |
|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 | | | 건축기과 정 유 병 화 |
| 지방조부보조수 민 유 식 | 식 | 영 | | 건설국 영선과장예보함 |
|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 | | | 건축기과 정 한 기 호 |
| 지방도목기사 조 병 현 | 현 | 영 | | 도시계획국 건축과장예보함 |
|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 | | | 지방건축기사 이 원 준 |
| 지방도목기사보 심 재 심 | 심 | 영 | | 북지읍 명함 |
|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 | | | 중구 건축과장 직무대리물 |
| 지방도목기원 신 영 선 | 선 | 영 | | 명함 |
|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 | | | 1972. 1.25. |
| 지방도목기원보 최 해 딘 | 딘 | 영 | | 지방화공기원보 김 중 국 |
|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 | | | 원에의하여 그직을명함 |
| 기한부공무원 윤 영 균 | 균 | 영 | | 1972. 1.26. |
|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 | | | 윤 진 규 |
| 지방기계기원보 양 후 구 | 구 | 영 | | 조건부 지방막무기원보에임함 |
|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명함 | | | | 용산구보건소 근무를명함 |

| | | | |
|--|---|-------|--|
| 조건부 지방간호지원보에임함 아동병원 근무를명함 | 서 예 선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직을 명함 | | |
| 조건부 지방간호지원보에임함 오류부녀보호지도소 근무를 명함 | 박 춘 옥 1972. 2. 1. 지방수의 사보 권 1호 서울특별시 전입을명함 지방수의 사보에 임함 | | |
| 조건부 지방간호지원보에임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명함 | 김 신 자 2호봉을 금함 성동보건소 근무를명함 지방약무지원 이 전 령 | | |
| 조건부 지방간호지원보에임함 등재문구보건소 근무를명함 | 조 갑 순 서울특별시 전입을명함 지방약무지원에 임함 5호봉을 금함 | | |
| 조건부 지방간호지원보에임함 종로구보건소 근무를명함 | 김 개 남 종로구보건소 근무를명함 약 무 사 합 명 수 | | |
| 지방약무지원보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명함 1972. 1. 28. | 원 석 오 지방약무기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금함 서대문보건소 근무를명함 | | |
| 기한부공무원 (지방보육지원보 김영수의 근무규칙등)에 임함 5급 7호봉을 금함 구회정리계 1과 근무를명함 1972. 1. 29. | 김 병 기 지방약무기사보 임 관 승 남부병원 약제과장보급 지방약무지원 보 공 국 서대문병원 약제과장보급 지방약무지원 관 영 서 중부병원 약제과장보급 | | |
| 지방약무기사 원에의하여 그직을명함 조건부지방의무기사 원에의하여 그직을명함 지방약무기사 원에의하여 그직을명함 1972. 1. 31. | 상 봉 순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지방보건지원 김 신 국 박 삼 군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사 조 예 형 최 명 석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사보 박 유 남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 | |
| 지방보육지원보 | 김 기 용 지방간호지원 | 조 옥 자 | |

| | | |
|------------------|-----|---------------|
|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 안 종 | 지방행정서기보 찬 원 택 |
|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 | 행정서기보에 입함 |
| ©1972. 2. 8. | | 1호봉을 급함 |
| 원내의하여 그직을 면함 | 김 영 | 공무원교육원 근무를명함 |
| 원내의하여 그직을 면함 | 조 성 | 지방행정서기보 김 훈 |
| 원내의하여 그직을 면함 | 임 제 | 행정서기보에 입함 |
| 원내의하여 그직을 면함 | 김 준 | 4호봉을 급함 |
| ©1972. 2. 9. | 김 준 | 공무원교육원 근무를명함 |
| 기한부공무원 (지방건축기원보 | | 지방기계기사보 차 병 출 |
| 박상석의 근무부추적기간중) | | 운수지도과 파견근무를명함 |
| 에 입함 | | 지방기계기사 윤 병 현 |
| 5급 6호봉을 급함 | | 운수지도과 근무를명함 |
| 아파트관리과 근무를 명함 | | 지방기계기사 박 덕 용 |
| ©1972. 2. 15. | | 기절과 근무를 명함 |
| 조건부 지방약사기원보에입함 | 백 은 | 지방기계기사 김 산 익 |
| 의약과 근무를명함 | 김 더 | 운수사업과 근무를명함 |
| 조건부 지방약사기원보에입함 | | 지방축산기사보 박 용 하 |
| 의약과 근무를명함 | 오 석 |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
| 조건부 지방수의원보에 입함 | 허 인 | 지방축산기원보 김 동 희 |
| 가속위생시험소 근무를명함 | 고 덕 |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
| 조건부 지방수의원보에 입함 | | 지방토목기사보 박 석 곤 |
| 가속위생시험소 근무를명함 | | 원내의하여 그직을 면함 |
| 행정주사에 입함 | | 지방항공기사보 홍 정 선 |
| 3호봉을 급함 | | 보광동수원지사무소 |
| 노동위원회사무국 근무를명함 | | 파견근무를 명함 |
| | | 지방화공기원 송 용 기 |
| | | 보광동수원지사무소 |
| | | 파견근무를 명함 |
| | | 지방화공기원보 장 원 수 |
| | | 보광동수원지사무소 |
| | | 파견근무를명함 |
| | | 지방화공기원보 노 병 일 |
| | | 보광동수원지사무소 |
| | | 파견근무를 명함 |

| | | | |
|-----------------|-------|--------------------|-------|
| 지방특무기사보 | 김 해 열 | 지방보전연구사 | 김 기 동 |
| 건설부 진출을 명함 | | 지방약무기사에 임함 | |
| 조건부지방간호기사 | 김 순 일 | 5호봉을 급함 | |
| 지방간호기사에 임함 | | 경신병원약제과장직무내리을명함 | |
| 6호봉을 급함 | | 지방약무기사 | 박 용 결 |
| 성동구보건소 근무를명함 | | 중부병원 약제과장 | |
| 조건부지방간호기사보 | 김 온 안 | 직무내리를 명함 | |
| 지방간호기사보에 임함 | | 지방약무기사 | 정 동 일 |
| 6호봉을 급함 | | 서해문병원 약제과장 | |
| 보건제 1과 근무를명함 | | 직무내리를 명함 | |
| ©1972. 2.16. | | 지방행정주사 | 조 성 두 |
| 지방서기관 | 안 범 재 | 행정주사에 임함 | |
| 지방서기관에 임함 | | 4호봉을 급함 | |
| 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에보함 | | 인사과 근무를명함 | |
| 지방서기관 | 알 총 윤 | 지방보전연구사 | 김 기 동 |
| 지방서기관에 임함 | | 지방약무기사에 임함 | |
|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에보함 | | 5호봉을 급함 | |
| ©1972. 2.18. | | 경신병원약제과장직무내리을명함 | |
| 행정주사 | 이 철 우 | 지방기계기원 | 김 인 석 |
|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지도부장 | |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제 1항 | |
| 직무내리를 명함 | | 제 3호의 규정에의하여 휴직을명함 | |
| 지방행정사무관 | 김 전 순 | 지방행정서기보 | 이 건 혁 |
| 부녀과 부녀보호제장에보함 | | 노동청 진출을명함 | |
| 지방행정주사 | 박 국 자 | ©1972. 2.23. | |
| 근우회관장 직무내리을명함 | | 지방전기기사 | 김 석 주 |
| 조건부지방행정사무관 | 김 영 철 | 지방공무원법제 65조제 2 | |
| 복직을 명함 | | 제 1항 제 1호의 규정내 | |
| 공무원교육원 교수부근무를명함 | | 의하여 그직위를 해제함 | |
| ©1972. 2.21. | | 지방행정사무관 | 김 경 훈 |
| 약 무 기 좌 윤 준 식 | | 원내의하여 그직을면함 | |
| 서울특별시 진입을명함 | | ©1972. 2.24. | |
| 지방약무기좌에 임함 | | 지방행정사무관 | 이 두 혁 |
| 1호봉을 급함 | | 지방공무원법제 69조 2, 3호의 | |
| 남부병원 약제과장에보함 | | 규정에의거감봉6월에처함 | |
| | | ©1972. 2.28. | |
| | | 약 무 기 좌 윤 준 식 | |
| | | 서울특별시진입을명함 | |
| | | 지방약무기좌에 임함 | |
| | | 1호봉을 급함 | |
| | | 남부병원 약제과장에코함 | |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제1호

서울 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소로망결정
서울 도시계획 가로 일부 변경 및
소로망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
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계획 결정되

지척승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함.
관계 도서를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
와 관할 구청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

1972. 1. 6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가. 가로 조서

| 구분 | 등급 | 유형 | 번호 | 폭원 | 연장 | 기 | 점 | 종 | 점 | 비 | 고 |
|----|----|----|-----|-----|------|-----------|-----------|-----------|---------|---------|---|
| 계획 | 중로 | 2 | | 16m | 330m | 용제동 | 산 33-32 | 용제시민아파트입구 | | 건설부고시 | |
| 시설 | 소로 | 1 | | 10 | 330 | | | | | 제 667호 | |
| | | - | 2-1 | 8 | 220 | 시립아파트 진입로 | | 용제동 | 산 33-54 | (71.11. | |
| | | | 2-2 | 8 | 209 | 용제동 | 산 33-63 | 용제동 | 산 33-63 | 26) | |
| | | | 3 | 8-1 | 6 | 290 | | 용제동 | 산 33-54 | | |
| | | | 3 | 3-2 | 6 | 54 | 용제동 | 산 33-63 | 용제동 | 산 33-63 | |
| | | | 3 | 8-3 | 6 | 150 | 아파트순환도로 | 용제동 | 산 33-63 | | |
| | | | 4 | 4-1 | 4 | 154 | 태권 제1아동공원 | 용제동 | 산 33-54 | | |
| | | | 4 | 4-2 | 4 | 104 | 용제동 | 산 33-63 | 용제동 | 산 33-64 | |
| | | | 4 | 4-3 | 4 | 95 | 태권 제2아동공원 | 2-2호선 | | | |

나. 공원변경 조서

| 구분 |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 기정 | 태권 제1아동공원 | 용제동 산 33-65 | 640㎡ | 건설부 고시 제 667호 (71.11.26) |
| 변경 | | 용제동 산 33-65 | 640 | |
| | | 용제동 산 33-62 | | |
| 기정 | 태권 제2아동공원 | 용제동 산 33-63 | 400 | |
| 변경 | | | 400 | |

(도면생략)

※건설부 고시제 667호
서울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
업중 다음과 같이 일부 시설을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함.

관계도서를 서울시장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1971. 11. 26.

건설부장관

| | | | | | | | | | |
|--|-----------|----|----|--|---|-------------|------|-------|----|
| 가. 도로변경 결정조서 : 별첨 나. 공원 : 별첨 가. 도로변경 결정조서 | | |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 함. | | | |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견장 | 기 | 설 | 종 | 경 |
| 채지 | 승로 | 2 | | 15m | 330m | 홍석동 산 33-32 | | 식민가파트 | 입구 |
| 나. 공원변경 결정조서 | | | | | | | | | |
| 구분 | 명칭 | | | 위치 | | 면적 | 비고 | | |
| 기정 | 태진재 1아동공원 | | | 홍계동 산 33-65 | | 640㎡ | | | |
| 변경 | " " | | | 홍계동 산 33-65 | | 640 | 위치변경 | | |
| 기정 | 태진재 2아동공원 | | | 홍계동 산 33-62 | | 400 | | | |
| 변경 | " " | | | " " | | 400 | 위치변경 | | |
| ㉔ 서울특별시 고시제 2호 도시계획 소로 확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구역중 영등포 일부지역 (봉천·신정·목동 일부)에 대 해서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로로 확정되었기 다음과 같이 고시함.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 1972. 1. 7. 서울특별시장 | | | | | 2. 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 ㉕ 서울특별시 고시제 3호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및 성북 구 영등동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소로 일부 변경 및 제1종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 제 13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함.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산할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거 함. | | | | |

0813

3. 노선조서

| 구 | 분 | 등급 | 류 | 번호 | 폭 | 원 | 연 | 장 | 기 | 결 | 종 | 결 | 비 | 고 |
|---|---|----|---|----|-----|-----|-----|---|----------|-------|-----------|-------|----|------|
| 기 | 정 | 소 | 로 | 1 | 112 | 10m | 126 | m | 정수동 2가 | 333-5 | 정수동 2가 | 339-3 | 일부 | 폐지 |
| 폐 |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 정 | " | " | 1 | 118 | 10 | 208 | " | " | " | 정수동 2가 | 335-1 | 폐 | 지 |
| 폐 |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 정 | " | " | 2 | 143 | 8 | 198 | " | " | " | " | " | " | " |
| 폐 |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 정 | " | " | 2 | 134 | 8 | 70 | " | 정수동 169의 | 16 | 정수동 169-4 | " | 일부 | 선형변경 |
| 변 | 경 | " | " | " | " | " | 62 | " | 정수동 169의 | 18 | 정수동 169-4 | " | " | " |

1972. 1. 7.

서울특별시

④ 서울특별시 고시제 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소로선설

1. 서울특별시 관내 성동구 북수동 도시계획 소로 선설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하여 고시함.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3. 노선조서

| 구 | 분 | 등급 | 류 | 번호 | 폭 | 원 | 연 | 장 | 기 | 결 | 종 | 결 | 비 | 고 |
|---|---|----|---|----|---|----|-----|---|-----|-------|-----|-----|---|---|
| 신 | 설 | 소 | 로 | 2 | | 8노 | 72M | | 북수동 | 449-3 | 북수동 | 454 | | |
| " | " | " | " | 2 | | 8 | 92 | | " | 432 | " | 429 | | |
| " | " | " | " | 3 | | 8 | 50 | | " | 454 | " | 455 | | |
| " | " | " | " | 3 | | 8 | 118 | | " | 452 | " | 435 | | |
| " | " | " | " | 3 | | 8 | 27 | | " | 430 | " | 426 | | |

1972. 1. 7.

서울특별시

④ 서울특별시 고시제 5호

도시계획 소로 선설 및 일부변경

1. 서울시 관내 도시계획 소로로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설 및 일부변경을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 및 성북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

| 3. 노선신설 및 변경조서 | | | | | | | | | |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기 | 점 | 종 | 점 | 비고 |
| 신설 | 소로 | 1 | 101 | 10M | 188M | 수유동 | 293-2 | 수유동 | 549 | 각각권해부분 일부 변경. |
| " | " | " | 102 | " | 106 | " | 460 | " | 499 | |
| " | " | " | 103 | " | 265 | 미아동 | 62-8 | 미아동 | 450 | |
| 기존 | " | 3 | | 6 | 50 | 구로동 | 62-3 | 구로동 | 415-5 | |
| 변경 | " | " | | " | " | " | " | " | " | |
| 도면은 서울시청에보관. 1972. 1. 7. 서울특별시청 | | | | | | 변경을 도시계획법제12조 및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 3. 노선조서 | | | | |
| ◎서울특별시 고시제 6호 도시계획 소로 신설 및 변경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 및 상 도동 관내 도시계획 소로의 신설 및 | | | | | | | | |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기 | 점 | 종 | 점 | 비고 |
| 신설 | 소로 | 3 | | 8M | 100M | 신림동 | 667-15 | 신림동 | 667-19 | |
| 기존 | " | 3 | | 6 | 135 | 상도동 | 180-1 | 상도동 | 367-4 앞 | |
| 변경 | " | " | | " | " | " | " | " | " | |
| 별첨도서 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에 보관) | | | | | | 1972. 1. 7 서울특별시청 | | | | |
| ◎서울특별시 고시제 7호 도시계획 소로 결정 (확정)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 소로들 2. 노선조서 | | | | | |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 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당항에 공함. | | |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기 | 점 | 종 | 점 | 비고 |
| 가정 | 소로 | 2 | | 8M | 158M | 신길동 | 153 의 15 | 신길동 | 202 의 133 | |
| 변경 | " | " | | " | 160 | " | " | " | " | |
| 가정 | " | 4 | | 4 | 40 | 대현동 | 67 의 18 | 대현동 | 67 의 20 | |
| 변경 | " | " | | " | 18 | " | " | 대현동 | 67 의 73 | 22M 폭도 |
| 3. 도면: 별첨생략 | | | | | | 1972. 1. 7. 서울특별시청 | | | | |

◎서울특별시 고시제 9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관계도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1972. 1. 11.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위치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방배동산 84-3 산 84-4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명 칭 :

국군통합 법무 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면적 : 9,043 명

3. 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 공산구 육군본부 병부감실

국군통합 법무 주택단지 조성위원회

위원장 대령 박 윤 상

4. 사업확수 및 준공년월일

착수 1972. 1.

준공 1972. 10.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생략)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서울특별시 고시제 10 호

도시계획 시설 (가로) 일부 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6 호 (71.5.13) 로

실시계획 인가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 산 161-2 의 8 필지에 대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내 가로 시설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함.

2. 관계 도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1972. 1. 11.

서울특별시 장

가. 가로변경조서

| 구분 | 등급 | 유형 | 번호 | 폭 | 원장 | 기 점 | 종 점 | 비 고 |
|-----|----|----|------|-----|------|-----------------|-----------------|-----|
| 기 정 | 소로 | 1 | 10-1 | 10M | 165M | 신림동 409-4 | 신림동 산 151-6 | |
| 변 경 | " | " | 20-1 | 10 | 165 | " 409-1 | " 161-6 | |
| 기 정 | " | 2 | 3-1 | " | 217 | 산 161-6 (간선 20) | " 408-3 | |
| 기 정 | " | 3 | 6-1 | 6 | 266 | 산 161-2 상부 | 산 161-6 상부 | |
| 변 경 | " | " | " | " | 136 | 산 161-6 | 산 151-6 " | |
| 기 정 | " | " | 6-2 | " | 270 | 산 161-6 (간선 29) | 산 161-6 " | |
| 기 정 | " | " | 6-3 | " | 155 | 소 6-1호 중간 | 소 6-2 | |
| 변 경 | " | " | " | " | 348 | 산 161-5 (소 6-4) | 산 161-6 (소 6-2)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기 | 경 | 종 | 점 | 비고 |
|----|----|----|-----|----|------|-----------------|---|---------|---------|----|
| 기정 | 소로 | 3 | 6-4 | | 385M | 소 6-8 | | 소 6-2 | 상부 | |
| 변경 | " | " | " | | 370 | 산 161-5 | | 산 161-6 | (소 6-2) | |
| 기정 | " | " | 6-5 | | 325 | 소 6-8 | | 소 6-2 | 주간 | |
| 변경 | " | " | " | | 322 | 산 161-5 (소 6-8) | | 산 161-6 | (소 6-2) | |
| 기정 | " | " | 6-6 | | 325 | 소 6-8 | | 소 6-2 | 하부 | |
| 변경 | " | " | " | | 326 | 신흥동 408-3 | | 산 161-6 | (소 6-2) | |
| 기정 | " | " | 6-7 | | 129 | " 409-3 | | 소 6-4 | | |
| 변경 | " | " | " | | 132 | " 409-3 (소 8-1) | | 산 161-5 | (소 6-3) | |
| 기정 | " | " | 6-8 | | 145 | " 408-3 | | 소 6-4 | 기점 | |
| 변경 | " | " | " | | 124 | " 408-3 | | 산 161-5 | (소 6-4)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영략).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 호

결정 하얏기 고시 함.

서울 도시계획 일부변경

관계 도서를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 52 호 (71.7.15)

영등포 구정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가로 시설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가. 가로변경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기 | 점 | 종 | 경 | 비고 |
|----|----|----|----|----|------|-----|--------|-----|--------|------|
| 당초 | 소로 | 2 | | 8M | 562M | 봉천동 | 산 17-3 | 봉천동 | 산 17-3 | |
| 변경 | " | " | | " | 590 | " | " | " | " | 도로연장 |
| 당초 | " | 3 | | 6 | 305 | " | " | " | " | |
| " | " | " | | " | 420 | " | " | " |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영략).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 호

한강개발비

4,722,505,000 원

197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비

3,650,155,000 원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토지구획정리비

6,052,212,000 원

같이 고시 함.

택지조성비

52,596,000 원

1972. 1. 7.

지하철 건설비

6,815,004,000 원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비

500,003,000 원

회계별

예산액

건설자생성비

375,000,000 원

총 계 73,892,627,000 원

유희도로비

302,061,000 원

일반회계 35,950,404,000 원

시민회관비

84,650,000 원

특별회계 37,942,223,000 원

재해구호비

38,871,000 원

| | |
|--|---|
| 운수사업비 1,727,464,000원 수도비 11,620,698,000원 ◎서울특별시 고시제 13호 하천강화 및 공작물 설치허가 | 하천강화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천 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72. 1. 18. 서울특별시장 |
|--|---|

| 허가 년월일 | 설비용장소 | 설비용면적 | 경방목적 | 공작물개요 | 설비용기간 | 허가받은자의 주소·성명 |
|-----------|--------------------------|-------------------|---------------|--|-------------------|------------------------------|
| 72. 1. 18 | 성북구정농 동 640-18 번지일 | 252.0㎡ (76.3명) | 공작물설치 (복개) | 복개공사 길이 = 26 m 폭 = 8 m 높이 = 2.8 m 3면 | 공사착공일로부터 3개월 간 | 성북구정농동 881- 11번지 이 중 국 |

◎서울특별시 고시제 14호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

- 도시계획사업 (도로확장)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2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
제 1과와 영등포구청 시민홍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고 있음.

1972. 1. 21.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당동 647의 26의
131필지 (사당동-남태령 간)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당동-남태령 도로확장공사
폭: 30미터, 연장: 2,400미터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972. 1. 21 - 1972. 6. 30.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
첨

◎서울특별시 고시제 15호

서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
택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
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성북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1972. 1. 22.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산 112의 1의
4 필지

-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기 조성 사업
 명칭: 송천주택단지
 시행면적: 5,970 평
 - 3. 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동 745-32
 심재길
 -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 1972. 1.
 준공: 1972. 5.30.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
 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기수
 용법 제 4 조 제 3 항에 규정된 관계인
 의 주소·성명 (별첨)
 - 7. 인가내용
 별첨 인가증 및 인가도서 (생략).
- 인 가 증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성북구
 미아동 산 112의 1 외 4필지
 -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기 조성
 사업
 명칭: 송천주택단지
 - 3.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동 745-32
 심재길
 - 4. 인가번호: 서울특별시고시제 15 호
 - 5. 사업기간:
 착공 인가증 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
 준공 1972. 5.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

- 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생략)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기수
 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생략)
- 위와 같이 아래 조건을 부하여 도시
 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6 조 규정의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별첨 설
 계도서와 같이 인가함.
1972. 1. 22.
 서울특별시
 (별첨 조서)
- 인 가 조 건
- 1. 본 사업은 사업인가신청서와 설계도
 및 설계서제 작거 신청하되 다음 인
 가조건을 따라 준공하는 물론 도시경
 계획의 용하는 절차나 변경 또는 이
 에 관한 처분을 할수하면 공사할 하
 여야 한다.
 - 2. 본 사업은 공사 착공시에는 착공식
 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준공
 제한 제출하면 관공청의 검사를 받아
 야 하며 사업목적 목적을 내인할 수
 있는 경제표지수 (500×500)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본 인가조건제 의거 시설규모가 변
 경되었거나 변경 또는 조정할·사안이
 있는 시는 실제 변경하여 이득 맞도
 록 신고하되 본 사업계획서와 설계서.
 설계도면에 자기 표시된 모든 토·의
 동치는 빠짐없이 신고하며 그 주요등
 정관 다음사 같이 구분한다.
 도로·하수도·이동공관·상수도·보장·
 주차장·쓰러기 시설장·역지공사와 이

- 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 4. 본 공사는 준공검사관 될하기 전에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 5. 공사집행에 있어 토사유출·역반 등으로 인접지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착수전에 미리 방책을 하여야 하며 이 공사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재해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보상 또는 원상복구비 산정은 본시가 결정한다)
- 6. 본 지역의 임목번채 등은 별도로 허가받아야 하며 특히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저촉될 시는 이를 피하여야 한다.
- 7. 본 사업집행의 착수 및 준공에 있어서는 별도로 토지개발사업법 제 55조의 이행과 지적법 제 20조 규정에 의한 실시를 하여야 하고 준공을 사시에는 구청장이 발부하는 인증도면 첨부하여야 한다.
- 3. 공사진척 사항은 1주 1회 감독관에게 1개월 1회는 구청장 경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9. 지구내 배수시설은 시설구거 또는 하천에 연결 시공될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0. 액지조성계 있어서 석축 구조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이를 초과할 시는 콘크리트용벽으로 구조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낮은 높이의 석축으로 시공할 것.
- 11. 그 밖의 공사는 서울시 포장공사 시방서

- 및 규격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12. 상수도 시설은 서울시의 기 급수구역의 급수상황을 감안하여 배수관을 매설하되 서울시 급수조례 제 17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에 의거 목수가 압시설 인가를 받아 수탁공사로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3. 본 사업구역내의 임목은 가능한 한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 이상의 벌채행위를 금지한다.
- 14. 공사완료후의 지구내의 공공시설·봉지는 도시계획법 제 83 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귀속시킨다.
- 15. 본 공사집행을 중도에 중단 또는 미시공하거나 변경 시공하는 등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기간의 연장, 기타 인가조건과 행정지시에 위배 불응할 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 때 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의거 본 시에서 직접 또는 제 3자에게 사업집행을 종료케 하고 그 비용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16. 본 사업별 완수키 위하여 귀하가 공사이행보증금금에 예납한 바 본 예치금은 전항의 계약행의 경우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7. 본 인가조건 및 설계도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시행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부담은 사업집행자 부담으로 한다.
- 18. 사유지 보상은 대토, 교환 등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구와 충분한 협의할

거쳐 분쟁이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자 책임부담으로 일체의 책임이고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개인 민사상 문제에 관하여는 본시책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19. 이상 조건을 위해 하였을 때에는 본인가를 취소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인가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고 도시계획법 제 78조 규정의 거조치하는 등시 본시의 지시내 따라 자비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첨부, 설계도 및 설계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고시제 16호

서울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

- 1. 서울 도시계획 사업이 도로신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 제 1과와 성북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도시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함.

1972. 1. 24.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성북구도봉동노원교-성북

구공릉동 도로신설공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로 신설공사

계획 : B = 25-35

시책 : L = 20, L = 6450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972. 2. - 1972. 6. 30.

마. 사용 또는 수용할 지 및 건물 의 조서와 기번 및 지목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관의 인의 주소·성명 : 성북

인 가 중

1.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성북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신설, 도

봉환 노원교-공릉동 도로신설

계획 : B = 25-35

시책 : B = 20, L = 6450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4.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제 16호

5. 사업기간 : 1972. 2. - 1972. 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도시 건물

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외

의외 권리의 명세 명칭.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도시계획

법 제 25조 제 2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명칭.

위와 같이 하더라도 본 시가 도시계획

법 제 25조 및 제 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실시 인가는 별첨 설계도

사와 같이 인가함.

1972. 1. 24.

서울특별시

가. 인가조건,

1. 사업실시 전 10% 지액권이 사전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공금의 지급을

한다.

2. 시공설계도서는 별첨 계획도(토지

(필면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㉔ 서울특별시 고시제 17 호

공용수면 설정 및
공작물 설치허가 취소
공유수면 설정 및 공작물 설치허가
취소를 공용수면 관리법 시행령 제 4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72. 1. 25.

서울특별시청 양 터 직

1. 허가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39 의 4 번지
앞 구거

2. 허가규모

길이 = 23 m, 폭 = 5.1 m

3. 허가목적

복개투수로

4. 취소일자

72. 1. 25.

5. 허가받은 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39-4
우일운영주식회사 대표 김 봉 연

6. 취소사유

준공기간내 공사미착공. 끝.

㉕ 서울특별시 고시제 18 호

서울특별시 중기관리사업소 위치변경
서울특별시 중기관리사업소 위치를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함.

가. 변경후위치: 영등포구등촌동 532 의 1
나. 변경전위치: 영등포구문래동 3 가 76
의 5. 끝.

1972. 1. 27.

서울특별시청

㉖ 서울특별시 고시제 19 호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공유수면매립
법 제 7 조와 동법시행령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72. 1. 27.

서울특별시청

| 연 령 일 | 매 립 장 소 | 매립면적 | 매립목적 | 준공기간 | 면허를받은자 주소·성명 |
|-----------|------------------------------|----------|-----------------|--------------|--------------|
| 72. 1. 27 | 서울특별시성동구 군자동 송정동 (신승연) | 30,000 평 | 지하철 차고 부지 조성 | 착공일로부터 2년 | 서울특별시청 |

㉗ 서울특별시 고시제 20 호

도시계획 소로신설 및 일부변경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 가 및 영
등포구 대방동 관내 도시계획 소로신
설 및 일부변경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3. 노선신설 및 변경조서

| 구분 | 종급 | 류별 | 번호 | 목원 | 연장 | 기 점 | 종 점 | 비 고 |
|----|----|----|----|----|-----|-------------|------------|--------|
| 신설 | 소로 | 4 | | 4m | 16m | 종로 5 가 | 종로 5 가 | |
| 기 | | 1 | | 10 | 780 | 대방동 293-1 앞 | 대방동 351- 앞 | 위치일부변경 |
| 변경 | | 1 | | 10 | 790 | | | |

및 동법 제 1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관할구정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에 보관)
1972. 2. 7.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고시제 21호
도로계획 소로 결정고시(확정)

1. 서울시 관내 도시계획 소로 신설될 갈남 도시계획법 제 21조 및 동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정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3. 노선조사

| 구분 | 종급 | 류 | 일번호 | 폭원 | 연장 | 기 | 경 | 종 | 경 | 비고 |
|----|----|-----|-----|-------|------|-------------|---|-----|--------|----|
| 신설 | 소로 | 1-2 | | 8-10M | 500M | 금호동(금복동)로타리 | | 신림동 | 16B-60 | |

4. 도면: 별첨.
1972. 2. 9.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고시제 22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세 조례 제 3조 제 3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다 음
1972. 2.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서울특별시 행정 관할 전지역으로 한다.

1972. 2. 17.
서울특별시청 양 백 식

◎서울특별시 고시제 23호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실시 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조

- 및 제 2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 제 1과와 성동구청 시민분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1972. 2. 18.
서울특별시청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강길교 - 구의동, 서재 - 워커·힐 - 광장동.
2. 사업의 종류 및 넓적
워커·힐 - 구의동간 도로확장공사
폭: 12미터 연장 1,900미터
폭: 30미터 연장 1,500미터
3.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972. 2. - 1972. 6. 30.
5. 사방 또는 수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기적 및 건물과 조서,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력 및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5. 검사장소

가축사육장소 또는 구청에서 지정한 장소

6. 기타 자세한 것은 관할구청 산검과 (농림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2.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고시제 26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물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제도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2. 2. 22.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동동산 130-1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명칭

서울고등검찰청 직원 주택조합
시행면적
6,400 평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고등검찰청 직원 주택조합
조합장 황 환 성

4.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착수 : 1972. 2

준공 : 1972. 5. 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생략)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액 미만 관계인의 주소·성명 (생략).

7. 인가비용

별첨 인가증 및 도면모시와 같음.
붙.

인 가 증

1. 사업집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동동산 130-1

2. 사업의 종류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명칭 : 서울고등검찰청 직원 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면적 : 6,400 평

3. 사업자의 주소·성명 : 서울 고등검찰청 직원주택조합장 황 환 성

4.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제 26 호

5. 사업기간

착공 : 인가증 수리일로부터 10일 이내
준공 : 1972. 5. 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물의 소재,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생략)

위와 같이 아래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실시계획을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

1972. 2. 22.

서울특별시

(별첨 인가조건)

인 가 조 건

- 1. 본 사업은 사업신청서와 설계도에 의거 시행하되 본 인가조건을 특히 준수하는 물론 도시계획법에 정하는 절차나 경력 또는 이에 관한 처분불 준수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
- 2. 본 사업은 공사 착공시에는 착공계획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시에는 준공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 경계구역을 확정할 수 있는 경계표지주 (9cm x 9cm 각)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본 공사는 건설법 면허소지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 (공사 시공감독자의 토목건설업 면허증 사본 및 사진, 이력서, 주민등록 초본을 착공제와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 4. 본 사업 집행의 착수 및 준공에 있어서는 별도로 도시개발사업법 제 55조의 이행과 시적법 제 20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시에는 구청장이 발부하는 인종도란 첨부하여야 한다.
- 5. 공사집행에 있어 토사유출, 낙산 등으로 인접지배 피해가 없도록 공사 착공전에 미리 방제를 하여야 하며 이 공사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재해에 대하여는 시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보상 또는 원상복구비 신청은 당사가 결정한다).

- 6. 본 공사 준공검사를 필하기 전에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 7. 본 지역의 임목 벌채 및 발파에 대하여는 별도 허가를 득한후 착공할 수 있고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시는 이를 필하여야 한다.
- 8. 공사 진척사항을 매주 1회 감독관에 매월 1회씩 구청장 경유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9. 본 사업 인가지구 상단 임야와 접하는 산비탈 계곡 부근에 30㎡ 이상의 침사지를 설치할 것.
- 10. 단지배 하수관을 기설 하수관에 연결하는 유입하수 관경은 D=100, 구배는 0.8%로 하고 지표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20㎡ - 30㎡ 간격으로 빗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의 낙차가 크므로 맨홀에는 반드시 부관을 설치할 것.
- 11. 소로 3-2 노선중 맨홀(1)번과 (2)번 사이 관경은 D=90, 구배는 1.0%로 매설하고 기타 하수시설은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하수시설물은 서울시 규격품을 사용할 것.
- 12. 택지조성에 있어서는 석축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이를 초과할 시는 콘크리트 용벽으로 구조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며 가능한 낮은 석축 높이로 시공할 것.
- 13. 포장공사는 서울시 포장공사 시행서 및 규격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14. 상수도 시설은 지하수 개발로 자가

- 급수계획에 의거 취수정, 여과지, 배수지 설치장소 및 배관 매설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급수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별도 가압 시설 인가를 받아 수탁공사로 시행하도록 한것.
15. 공사 완료후의 지구내의 공공시설 용지는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무상 귀속시켜야 한다.
16. 본 사업을 완수키 위하여 귀하가 공사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바 본 예치금은 본 인가조건 및 행정지시에 위배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비 및 행정대집행비에 정하는 바에 의거 행정대집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17. 본 인가조건과 설계도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행정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압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3. 학교 시설조서
18. 시흥동 산 13C-2번지를 종파하는 진입도로는 본 사업실시 인가에서 제외하며 소 3-1호 노선은 산비탈면까지 연장 시공할 것.
19. 이상 인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도시계획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필요한 경우 본 인가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로 지시할 수 있다.
- 첨부. 설계도 및 설계서 1부. 끝.
- ◎서울특별시 고시제 26호
도시계획 학교 시설설정
1. 도시계획 학교 시설은 도시계획법 제22조,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성북구청에 비치하느 관계인에게 보임.

| 구분 | 위치 | 시설면적 | 비고 |
|----|----------------------|---------|--------|
| 학교 | 성북구 창동 산 205의 5와 4필지 | 13,457㎡ | 학교시설장지 |

| | |
|---|---|
| <p>별첨 도면참조 1972. 3. 2. 서울특별시 공 고</p> <p>◎서울특별시 공고제 1호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효력의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의 효력회복을 하 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p> | <p>살이 공고함. 1972. 1. 4. 서울특별시 양 목 식</p> <p>1. 허가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학동 7-19번지 및 하천</p> <p>2. 허가규모 암거 D=1m, L=150m 2편 유공관 147m, 무공관 3m 정수정 3m×3m, 각영높이 6m</p> |
|---|---|

출발 및 출발대설차 길이 = 200m

3. 허가목적
도수관설치 (공장에 소요되는 길이)

4. 허가기간
71. 5. 8 - 72. 2. 28

5. 주소·성명 (허가받은 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학동 7번지
서울미원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유

㉑서울특별시 공고제 2호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효력상실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의 효력상실을 하
천법 제 70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이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2. 1. 4.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허가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2가 1-안압
동 4가 41-37번지 사이 하천 (성북경찰
서 뒤 - 대광국민학교 뒤)
2. 허가규모
길이 = 1,444 m, 폭 = 22-26m
3. 허가목적
하천복개투 유도피관 및 상가가파트
건설
4. 필요일자
71. 11. 1.
5. 허가받은 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1번지
제달법인 한국유도원
이사장 장 경 순
6. 필요사용
기단배 공사 미착수

㉒서울특별시 공고제 4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자 허가
서울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불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
하였기 공고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관
할 구청과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성
북구 미아동 745-32 심재길에게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972. 1. 6.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사업집행자
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동산 112의 1 의
4필지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명칭 : 송천주내단지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동 745-32
심 재 길
4. 사업의 착수·준공년월일
착수 : 1972. 1.
준공 : 1972. 5. 30.
5. 사업계획 내용.
별첨 도서 (생략)
6. 조 건
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제정 공포 즉시
요구되는 보안사항을 수가 제출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나. 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 28 조

및 동법 제 34 조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시송달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28 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라. 도시계획법 제 78 조 규정에 의한 법령 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마. 이 사업시행에 있어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시설의 설치와 기타 행정명령을 이의없이 준수 승복하여야 한다.

바. 이 허가로 사업 시행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시공할 수 있다.

첨부. 계획도면 (생략). 끝.

◎서울특별시 공고제 6 호

도시계획 공원 변경 (제지)

당시 관내 경동공원이 건설부고시 제 701호 (71.12.17)로 변경 결정 고시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한 구정 시민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1972. 1. 10.

서울특별시장 양 덕 석
첨부. 건설부 고시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제 7 호

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

당시 중구회현동 1가산 1의 2에서 중구 장충동 2가 사이의 남산 순환도로 북측면 지역을 건설부고시 제 702호 (71.12.17)로 미관지구로 결정 고시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정 시민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1972. 1. 10.

서울특별시장 양 덕 석
첨부. 건설부고시 제 702호 사본 1부.

※건설부고시 제 720 호

서울도시계획 미관지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서울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1.12.17

건설부장 관

1. 미관지구 결정조서

|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미관지구 | 중구회현동 1가산 1-2에서 장충동 2가 산 14-33 사이의 남산 순환도로 북측면 | 700,000㎡ | 면적 3,800㎡ 특: 도로부단 경제개선 북측으로 200㎡ 내외 |
| | | 별칭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 끝. | |

◎서울특별시 구고제 8 호
 도시계획 공원 일부 변경
 당시 관내 상도 공원이 건설부 도시계 제 715 호 (71.12.22)로 변경 결정 고시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불 공고함.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있음.
 1972. 1. 10.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첨부. 건설부 고시문 사본 1 부, 같.
 ※건설부고시 제 715 호
 서울 도시계획 공원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서울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1.12.22
 건설부장관

1. 공원변경 결정조서

| 번호 | 공원명 | 위치 | 기정면적 | 변경면적 | 변경후면적 | 비고 |
|------|------|-------------|------------|--------|------------|----------|
| 내 13 | 상도공원 | 삼도동·동작동·후석동 | 1,237,382㎡ | 8,718㎡ | 1,238,618㎡ | 동치지구로 변경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시략).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 같.

◎서울특별시 고시제 16 호
 환지에정지 변경 지정
 1. 서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 지정함.
 2.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서 및 효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제 1 과 또는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림.
 1972. 1. 18.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 고시제 17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조건부 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 시행자인 서울 고등검찰청 괴원 주택조합장 황완성에게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972. 1. 20.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사업집행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흥동산 130-1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명칭: 서울고등검찰청 직원 주택단지 조성사업

-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고등검찰청 지원 주택조합
조합장 황 판 성
 - 4. 사업의 착수·준공년월일
착수 1972. 1. . .
준공 1972. . . .
 - 5. 사업계획 내용
별첨도서(생략)
 - 6. 조 건
 - 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적절 공포 즉시 요구되는 보완사항을 추가 제출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 나.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 28 조 및 동법 제 34 조 규정에 정하는 사항만 이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 실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다. 공사종말은 도시계획법 제 28 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감신분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 라. 도시계획법 제 78 조 규정에 의한 명령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 마. 이 사업시행에 있어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명하는 시설의 설치와 기타 행정명령을 이의없이 준수 승복하여야 한다.
 - 바. 본 허가로 사업 시행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시공할 수 있다.
- 첨부. 계획도면(생략). 끝.

①서울특별시 고시제 18 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자가 서울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허가할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 조의 구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하여 허가하였기 공고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대문 구청과 사업시행자인 태진건설수석회사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972. 1. 25.

서울특별시청 양 벽 석

- 1.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생동산 33 의 3 의 10 필지
-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면적
30,439㎡(9,207.8 평)
-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소문동 50-2 태진건설수석회사 노도이사 문 학 중
- 4. 사업의 착수·준공년월일
착수 1972. 1. . .
준공 1972. 12. 30.
- 5. 사업계획 내용
별첨도서(생략)
- 6. 조 건
 - 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적절 공포 즉시 요구되는 보완사항을 추가 제출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 나.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 28 조 및 동법 제 34 조 규정에 정하는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 실시 계획이 관여하여야 한다.

다. 방시 송달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광고하여야 한다.

라. 도시계획법 제 78조 규정에 의한 법원등 취환사항이 없어야 한다.

마. 이 사업시행에 있어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시책의 실천과 기타 행정명령 불의의 이익을 증복하여야 한다.

바. 본 허가로 사업시행할 수 있으며 별도 사업실시 계획을 인가받아야 시공할 수 있다.

첨부. 계획도면(생략). 글.

◎서울특별시 고시제 19 호
청산금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1. 주소 또는 거소성명
서울특별시종로구예지동 113 유영상의 22명

2. 구 분
도봉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 납입고지서 72년 수사분
가. 납부기간
72.1.8 - 72.2.7.
나. 납입장소
상업은행 시금고과 또는 당시 도시계획국 서무과
도봉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 납입고지서발 72.1.5. 각 납입의무자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직접 송달이 불능하여 납입기일을 72.2.10.로 정하여 지방세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2. 1.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도봉지구 (1차) 방시송달 대상자 조서

| 수납번호 | 불 지 | 차 산 금 | 유 자 | |
|------|---------------|---------|------------|-------|
| | | | 주 소 | 성 명 |
| 81 | 도봉동 449-1 | 2,116 | 예지동 113 | 유 영 상 |
| 49 | 방학동 204-1 | 791 | 하월곡동 68-2 | 이 세 우 |
| 96 | 도봉동 145-2 | 140,609 | 계기동 13 | 이 귀 하 |
| 26 | 방학동 233-1 외 1 | 3,248 | 도림동 144 | 유 기 진 |
| 29 | " 233-2, 3 | 848 | " | " |
| 42 | " 232-1 | 1,124 | 신당동 산 9-49 | 유 상 일 |
| 7 | 쌍문동 36-1 | 18,554 | 수유동 10-13 | 임 근 호 |
| 21 | 방학동 285-4 | 104,299 | 성북동 15-1 | 전 형 필 |
| 6 | 쌍문동 2-5 | 995 | " | " |
| 28 | 방학동 50-3 | 88,018 | 효창동 5-393 | 이 기 석 |
| " | " 산 50-3 | 68,817 | " | " |

| 수납번호 | · 물 | · 지 | 청 산 금 | 주 유 자 | | |
|---|-----|-----------|---------|---|---------|-------|
| | | | | 주 | 소 | 경 령 |
| 62 | 방학동 | 152-2 | 29,797 | 신당동 | 304-448 | 신 연 복 |
| 15 | 쌍문동 | 31-6 | 20,321 | 쌍문동 | 31-6 | 김 원 철 |
| 50 | 방학동 | 288-2 | 1,004 | " | 216 | 한 태 석 |
| " | " | 289-2 | 1,004 | " | " | " |
| 56 | " | 209-3 | 22,985 | 방학동 | 388 | 김 갑 순 |
| 75 | " | 118-2 | 887 | 도봉동 | 423 | 남 궁 건 |
| 77 | " | 122-2 | 9,813 | 방학동 | 122-2 | 권 사 문 |
| 79 | 도봉동 | 120 | 913 | 도봉동 | 771 | 윤 향 권 |
| 83 | " | 138-8 외 5 | 1,321 | " | 451 | 진 창 남 |
| 98 | " | 146-3 | 47,179 | " | 146-3 | 이 회 선 |
| 101 | " | 162-2 | 2,978 | " | 169 | 백 영 국 |
| 3 | 방학동 | 54-9 | 146,711 | 의정부시의정부 1동 187 | | 당 경 희 |
| <p>①서울특별시 고시 제 20 호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효력상실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의 효력상실을 하천법 제 70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2. 1. 25. 서울특별시청 양 택 식</p> <p>1. 허가장소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동 3 가 1 번지 - 5 가 118 번지 앞</p> <p>2. 허가규모 길 이 : 643 m 폭 : 20 m 높 이 : 2.8m</p> <p>3. 허가목적 하천복개후 상가아파트 건립</p> <p>4. 실효일자 72. 1. 1.</p> <p>5. 허가받은 자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동 3 가 11 번지</p> | | | | <p>성북상가주식회사 대로이사 임·승 구 6. 실효사유 준공기한내 공사 미준공</p> <p>②서울특별시 고시 제 21 호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효력상실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의 효력상실을 하천법 제 70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2. 1. 27. 서울특별시청 양 택 식</p> <p>1. 허가장소 서울특별시중로구삼정동 1-3 갈 구거</p> <p>2. 허가규모 폭 : 3m 면적 : 334.75 m² (102.40평)</p> <p>3. 허가목적 복개후 도로사방</p> <p>4. 실효일자 72. 11. 21</p> | | |

부한 인가조건에 의하여 사업시행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고시제 27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자허가

- 1. 서울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조건부 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972. 2. 7.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갈현동산 123 의 1 의 4 필지
-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명 칭 : 갈현주택단지
면 적 : 34,550㎡
-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갈현동 6 의 6
성 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원동 110 의 27
이 화 송
- 4. 사업의 착수·준공년월일
착 수 : 1972. 2.
준 공 : 1972. 10.31.
- 5. 사업계획 내용
별첨도서 (생략)
- 6. 조 건

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제정 공포 즉시 요구되는 보완사항을 추가 제출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나. 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 28 조 및 동법시행령 제 34 조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시송달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28 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라. 도시계획법 제 78 조 규정에 의한 법령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마. 이 사업시행에 있어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시설의 설치와 기타 행정명령을 이의없이 준수 순복하여야 한다.

바. 이 허가로는 사업시행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 실시계획을 권가받아야 시공할 수 있다.

첨부, 계획도면. 등.

◎서울특별시 고시제 31 호

청산금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도봉 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 납입고지서 72. 1. 6. 각 납입의무자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주소 불명으로 직접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납입기일을 72.2.29.로 정하여 지방세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2. 2. .

| | |
|---|--|
| 서울특별시청 양 백 식 | 지서 72 4 수시본 |
| 1. 주소 또는 거소·성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교동 25 플라코 과학의 16길 | 가. 납부기간 72.1.27 - 72. 2.29. |
| 2. 구 분 도봉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 납입고 | 나. 납입장소 상업은행 시금고과 또는 당시 도 시계획국 서무과 |

도봉지구 청산금 (2차) 고지서 등시승합 조서

| 수납번호 | 물 건 지 | 금 액 | 소 유 자 | | 비 고 |
|------|---------------|---------|---------------|----------|-----|
| | | | 주 소 | 성 명 | |
| 125 | 도봉동 178-18 | 15,130 | 무교동 25 | 플라코과학Co. | |
| 143 | " 170. 171-2 | 40,663 | 청과동 1가 131 | 박 금 선 | |
| 157 | " 산 98-8 | 40,922 | 봉의동 7-29 | 유 치 봉 | |
| 151 | " 168-7 | 50,275 | 파주군주내면연풍리 327 | 김 양 천 | |
| 172 | 창 동 200-1 | 329,784 | 동소문동 7가 22 | 김 정 희 | |
| 162 | 도봉동 186-2 | 7,720 | 미아동 564-11 | 정 금 광 | |
| 164 | " 185-4,8 | 336,645 | " 164 | 박 신 규 | |
| 169 | 창 동 212-1 | 13,374 | " 526 | 김 춘 산 | |
| 168 | " 201-1 | 353,663 | 광희동 2가 205-1 | 오 정 자 | |
| 180 | 방학동 47-1,2 | 58,280 | 미아동 533-54 | 김 기 환 | |
| 183 | " 110 | 22,649 | 방학동 110 | 김명진의 1인 | |
| 111 | 도봉동 163-13 | 122,328 | 도봉동 163-10 | 김 영 자 | |
| 137 | " 171-1 | 376,689 | " 171-1 | 장 감 예 | |
| 116 | " 163-9,61 | 377,471 | " 163-9 | 최 만 희 | |
| 112 | 창 동 197-9 | 310,751 | 창 동 197-9 | 임 학 수 | |
| 105 | 도봉동 185-13 | 354,412 | 도봉동 427-10 | 김 원 철 | |
| 105 | " 159-1 의 11번 | 326,071 | " 163-6 | 최 병 옥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 호

천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추가
사업인가 신청기간의 지정공고

1. 천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추가사업
시행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인가 신청
기간의 지정할 토지구획정리사업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제2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
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
제인에게 보이고 있음.

다 음

| 사업목적 | 사업명 | 시행지구 | 시행면적 | 인가신청기간 | 비고 |
|---|---------------------|----------------------------|----------|--------------------------------|----|
| 토지구획 정리사업 | 진호토지구획정리 사업 추가사업 | 성동구 명일동·상일동 고덕동·성내동 각일부 | 300,000평 | 72.2.15-4.15 (공고 일로부터 2개월간) | |
| <p>1972. 2. 15. 서울특별시청 양택식</p> <p>①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 호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효력 회복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의 효력회복을 하 천법 제 7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p> <p>1972. 2. 17. 서울특별시청 양택식</p> <p>1. 허가장소 영등포구상도동 29-170 번지선</p> <p>2. 허가규모 복개공사 길이 = 225m, 폭 = 5.5m, 높이 = 4m</p> <p>3. 허가목적 통로확보후 잔여 재천부지 양여</p> <p>4. 착수기간 72. 3. 10.</p> <p>5. 준공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 3개월</p> <p>6. 허가받은 자의 주소·성명 영등포구상도동 174-4 권선유 외 1인. 같.</p> <p>②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 호 수도공제 원리금상환 공고 서울특별시 제 2 회 상수도확장사업 지 방채 조례 제 8 조에 의하여 원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함을 고시함.</p> <p>1. 상환공제명 서울특별시 제 2 회 상수도확장사업 공제</p> <p>2. 상환일자 및 대상 ① 상환개시일 1972. 3. 2. ② 배출한 날로부터 만 1년이 지난 공제 배출 상환 71.3.10 → 72.3.10 이후 계시 (72.5.20 → 72.5.20)</p> <p>3. 상환금 지급업무 취급기관 한국산업은행 본점 증권부 · 시금고 업무부 (사본청구제)</p> <p>4. 참 고 ① 공제상환금 징수기는 주민등록증과 인상을 지참하여야 함. ② 제 1 회 상수도 확장사업 공제는 72.11.6 이후에 원리금을 일시 상 환함.</p> <p>1972. 2. 24. 서울특별시청 양택식</p> <p>③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 호 개발제한구역 통지지구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지적 결정 당시 개발제한구역 통지지구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지적 결정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의하여 (전 성부 고시 제 46 호 ; 72.2.11) 이를 고시</p> | | | | | |

합.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1972. 2. 14.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첨부. 건설부 고시 제 46 호 사본 1 부. 끝.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 호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실시공고
 1. 망우보지구획정리사업의 변경 실시계획을 (건설부 공고제 9 호, 1972. 1. 9)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14 조 및 동법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제 1 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변경 개요
 가. 사업명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시행지구
 서울특별시 용매문구 신내동, 망우

동·상봉동·면목동·중화동·육동·공농동 각 일부
 다. 시행면적
 당초 : 6,514,418.40 (1,970,602.70 평)
 변경 : 6,452,821.43 (1,951,969.70 평)
 1972. 3. 2.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 고시 제 47 호
 도시계획 미관지구 및 공지지구 결정
 서울특별시 관내 궁정동-정능간 및 영동지구 주요 간선 가로변에 대하여 건설부고시 제 739 호 (71.12.30) 로 미관지구 및 공지지구로 결정 고시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21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
 1972. 3. 2.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별첨 조서참조)
 1. 미관지구 결정조서

| 구분 | 종결 | 위치 | 면적 | 비고 |
|----|-----|-----------|-----------------------|--|
| 1 | 2 종 | 신사동 - 보이동 | 60,480 m ² | 광로 21 호선변 연장 : 3,770 m 폭 : 양측 각 12 m |
| 2 | " | 신사동 - 영동교 | 76,820 | 광로 14 호선변 연장 : 3,180 m 폭 : 양측 각 12 m |
| 3 | " | 영동교 - 대치동 | 61,820 | 광로 13 호선변 연장 : 2,580 m 폭 : 양측 각 12 m |

| 구 분 | 종 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4 | 2 종 | 서초동-성동구이동 | 27,600㎡ | 광로 20 호선변 연장: 11,500m 폭: 양측 각 12m |
| 5 | ' | 반포동-삼성동 | 92,180 | 대로 1 류 21 호선변 연장: 3,840m 폭: 양측 각 12m |
| 6 | ' | 압구정동-개포동 | 126,780 | 광로 16 호선변 연장: 5,240m 폭: 양측 각 12m |
| 7 | 3 종 | 신사동-신원동 | 240,000 | 광로 17 호선 (경부고속도로) 변 연장: 10,000m 폭: 양측 각 12m |
| 8 | ' | 방배동-성동구일동 | 1,204,000 | 광로 19 호선변 (개 3 순환도로) 연장: 46,000m 폭: 양측 각 12m |
| 9 | ' | 구정동-정릉압구 | 1,222,000 | 승로 2 류 56 호선변 대로 3 류 58 호선변 연장: 24,000m 폭: 양측 최소 12m 최대 200m |
| 계 | | 9 개 소 | 3,047,240 | |

2. 공가지구 결정조서

| 번 호 |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1 | 2 종 공가지구 | 평창동 (북악터널 서측) | 640,000㎡ | |
| 2 | ' | (북악터널 동측) | 322,700 |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건설부 고시제 739 호

서울 5 시제 회 미관지구 및 공가지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거 고시한다.
관제도서발 서울시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1. 12. 30.

건설부 장관

(별첨조서 참조)

1. 미관지구 결정조서


| 구분 | 종결 | 위치 | 면적 | 비고 |
|----|----|-------------|-----------------------|--|
| 1 | 2층 | 신사동 - 프이동 | 90,480 m ² | 광로 21호선변 연장 : 3,770m 폭 : 양측 각 12m |
| 2 | " | 신사동 - 영동교 | 75,430 | 광로 14호선변 연장 : 3,380m 폭 : 양측 각 12m |
| 3 | " | 영동교 - 석척동 | 61,620 | 광로 13호선변 연장 : 2,580m 폭 : 양측 각 12m |
| 4 | " | 서초동 - 성동구의동 | 27,600 | 광로 20호선변 연장 : 11,500m 폭 : 양측 각 12m |
| 5 | " | 반포동 - 삼성동 | 92,160 | 대로 1류 21호선변 연장 : 3,840m 폭 : 양측 각 12m |
| 6 | " | 압구정동 - 개포동 | 125,760 | 광로 18호선변 연장 : 5,240m 폭 : 양측 각 12m |
| 7 | 3층 | 신사동 - 선원동 | 240,000 | 광로 17호선 (경부고속도로) 변 연장 : 10,000m 폭 : 양측 각 12m |
| 8 | " | 양재동 - 성동구일동 | 1,104,000 | 광로 19호선변 (제3순환도로) 연장 : 46,000m 폭 : 양측 각 12m |
| 9 | " | 강정동 - 청농일구 | 1,222,000 | 중로 2류 56호선변 대로 3류 58호선변 연장 : 24,000m 폭 : 양측 최소 12m 최대 200m |
| 계 | | 8 합 소 | 3,090,240 | |

| 2. 공지지구 결정조서 | | | | |
|--------------|--------|-------------|-----------|-----|
| 번 호 |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1 | 2종공지지구 | 평창동(북악터널서측) | 646,000 ㎡ | |
| 2 | " | " (북악터널동측) | 322,000 | |

이상 결정조서는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

◎서울특별시공고제 48 호
 서울특별시시장의 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함.

1. 직 인 명 : 서울특별시시장의 인
 2. 게재년월일 : 72. 3. 1 10:00
 3. 인 명 : 별 첨
 1972. 3. 1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인 명
 서울특별시시장의 인



◎서울특별시공고제 51 호
 직인 개 자 공 고

1. 종로구청장 및 동대문구청장의 직인을 다음 인영과 같이 게재하였



기 공고함.

가. 인 형 명
 1) 종로구청장의 직인
 2) 동대문구청장의 직인

나. 게재년월일 : 72. 3. 1



다. 인 형 : 별 첨
 1972. 3.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인명 종로구청장직인

(구) (신)

인명 종로구청장(호적, 명사용)직인

(구) (신)

사 보 (제 220 호)

동해문구정감취안

기각을 구정감취안인일영

일 반 문 서 화

요 격 병 사 용

